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제17회
카르텔 업무설명회

Fair Trade Commission

공정거래위원회

목 차

Ⅰ. 카르텔 규제 개관 ····· 1

Ⅱ. 입찰담합 규제제도와 집행사례 ····· 11

Ⅲ.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판례 소개 ····· 35

Ⅳ. 참고자료 ····· 53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관련 부분) ····· 55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관련 부분) ····· 77
3. 공동행위 심사기준 ····· 92
4.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109
5.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119
6.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 122
7. 사업자단체활동지침 ····· 129
8.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137

Ⅰ. 카르텔 규제 개관

카르텔 규제 개관

2020. 12.

카르텔총괄과

순 서

Ⅰ. 카르텔 규제 개요

Ⅱ.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Ⅲ. 공동행위 인가제도

1

Ⅰ. 카르텔 규제 개요

2

Ⅰ. 카르텔 규제 개요

1 카르텔의 의미

- **부당한 공동행위 = 담합 = 카르텔**(cartel)
  - cartel: 라틴어 '가루다'(문서)에서 유래(독일어 kartel→cartel)
  - 중세 교전국 간 문서에 의한 휴전협정 → 기업 간 경쟁의 휴전
- **2 이상의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 결정 및 인상, 시장분할, 생산량 조절** 등을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카르텔의 폐해

-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경쟁조건을 경쟁자들이 인위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경쟁 메커니즘의 작동을 근원적으로 봉쇄**
- 합의를 통해 독점자와 같은 시장지배력을 형성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

3

Ⅰ. 카르텔 규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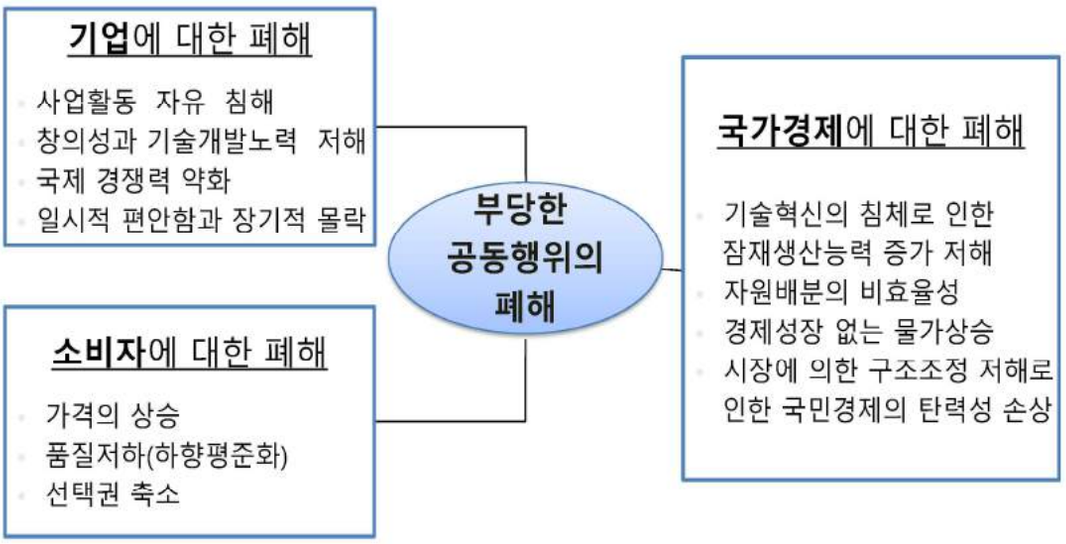

각 국은 카르텔을 시장경제 제1의 적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규제

4

Ⅰ. 카르텔 규제 개요

3 담합의 유형 (9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 호)

- **(경성담합, 4개)**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

  ①가격 담합, ②생산량(물량) 담합, ③시장(지역)분할 담합, ④입찰 담합

- **(연성담합, 5개)** 경쟁제한 효과도 있지만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

  ①상품. 용역 거래조건 등 설정, ②설비 신설 또는 증설제한, ③상품 종류 또는 규격 제한, ④공동회사 설립, ⑤그 밖에 사업 활동. 내용 방해. 제한

* 경쟁제한성 이란?
  → 일정 거래 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 수량,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정도

* 모든 담합이 당연 위법은 아님
  →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 등에 대해 엄격히 비교형량하여 심사

5

Ⅰ. 카르텔 규제 개요

4 담합의 횟수

- 일반적으로 담합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부과되는 벌점 및 과징금액 등에 영향
- 다만, 여러 차례의 담합이 '하나의 공동행위' 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
  →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부과되는 벌점 및 과징금액이 적어지지는 않음

* 하나의 공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 여러 차례의 담합이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 여러 차례의 담합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져야 함
✓ 여러 차례의 담합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함

Ⅰ. 카르텔 규제 개요

5 담합의 기간(시기/종기)⇒관련매출액과 부과과징금을 결정

Q: 담합(공동행위)이 시작된 날과 끝난 날은 어떻게 판단?

✓ 시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합 가담자들이 **합의한 날**이 공동행위 시기가 되나,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행개시일**(입찰이 실시된 날 등)을 공동행위의 시기로 봄

✓ 종기

-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원칙적으로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입찰 후 체결된 계약기간 종료일 등)을 말함
  한편, 가격 담합의 경우 합의에 참가한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등 사업자간 가격경쟁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 독자적인 가격결정일을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로 봄

7

Ⅰ. 카르텔 규제 개요

6 제재 수단 ⇒ 조치유형에 따라 벌점 부과 및 병과 가능

시정명령

- 법 위반행위 중지명령, 향후 금지명령
- 수명사실의 공표명령,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정보교환 금지명령 등)

과징금

- 관련매출액(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

고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도 고발 가능!!

기타

- 입찰담합 : 발주기관에 통보,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 조사 방해 및 거부 시 : 형벌/과태료 부과(3년/2억/5천만원)

8

Ⅱ. 자진신고 감면제도

9

Ⅱ. 자진신고 감면제도

1 제도 개념

☞사업자가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고발을 면제**하는 제도 (미국, EU,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전 세계 60여개 국 운영 중)

2 제도의 기능

10

Ⅱ. 자진신고 감면제도

3 감면 요건[법 제22조의2, 시행령 35조, 감면제도 운영고시]

☞ 공정위 '**조사 前 자진신고**'하거나 '**조사 後 조사협조**'한 **1순위자** 또는 **2순위자**

구 분		감면요건	감면혜택
1순위	자진신고 (조사 **前**)	①담합 증거를 단독 · 최초로 제공 ②공정위가 담합 정보 미입수 또는 충분한 증거 미확보 상태 ③조사 종료까지 성실하게 협조 ④공동행위 즉시 중단 ⑤5년 이내 감면 받은 적이 없을 것	· (과징금) 면제 · (시정조치) 면제 · (고발) 면제 가능
	조사협조 (조사 **後**)		· (과징금) 면제 · (시정조치) 감경 또는 면제 · (고발) 면제 가능
2순위	자진신고 (조사 **前**)	①담합 증거를 단독 · 두번째로 제공 ②조사 종료까지 성실하게 협조 ③공동행위 즉시 중단 ④5년 이내 감면 받은 적이 없을 것	· (과징금) 50% 감경 · (시정조치) 감경 가능 · (고발) 면제 가능
	조사협조 (조사 **後**)		

※ ①담합을 하도록 또는 담합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강요, ②5년 이내 담합 반복→ 감면 배제

11

Ⅱ. 자진신고 감면제도

4 추가 감면제도(Amnesty Plus)

☞ 사업자가 **담합 이외의 다른 담합**에 대해 **자진신고(조사협조)**한 경우
담합에 대해 과징금 · 시정조치를 추가로 감면

<추가 감경 비율 판단기준(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3조)>

다른 담합의 규모(관련매출액 기준)	당해 담합에 대한 과징금 추가 감경비율	
① 당해 담합의 규모 이하인 경우	20% 이내	
② 당해 담합의 규모 이상인 경우 (상회하는 규모별로 감경 비율 차등 적용)	2배 미만	30%
	2배~4배	50%
	4배 이상	과징금 면제

12

Ⅲ. 공동행위 인가제도

13

Ⅲ. 공동행위 인가제도

1 제도 개념

☞ 산업적·경제적 필요를 이유로 **시행령 상의 인가 요건** 충족 시 **일정 기간 동안 공동행위를 허용** (사업자 신청 → 공정위 심사)

2 인가 요건[총 6개, 시행령 제24조의2 내지 제28조]

① 산업합리화, ② 연구·기술개발, ③ 불황 극복, ④ 산업구조 조정, ⑤ 거래조건 합리화, ⑥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3 인가 배제 사유

① 당해 공동행위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②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당해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④ 당해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14

감사합니다.

15

Ⅱ. 입찰담합 규제제도와 집행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 규제제도와 집행사례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
박기흥

공정거래위원회

목 차

1. 입찰담합의 폐해
2. 입찰담합 금지규정
3. 입찰담합의 유형 및 적발사례
4. 합의의 의의 및 추정
5. 입찰담합 제재조치
6. 입찰담합 감시수단

공정거래위원회

1 입찰담합의 폐해

3

공정거래위원회

1 입찰담합의 폐해

◆ 전세계 경쟁당국은 카르텔을 “시장경제의 제1의 적”으로 규정하여 엄격히 제재

◆ 입찰담합(bid-rigging)은 경쟁제한성이 매우 중대한 경성카르텔(hard-core cartel)에 해당

▷ OECD는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조달가격이 경쟁수준보다 2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 특히 건설분야에서의 입찰담합은 낙찰률 상승에 따른 정부예산 과다 지출, 관련산업 경쟁력 저하, 사회기반시설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큰 사회적 피해 초래

4

1 입찰담합의 폐해

◆ 공정거래법(경쟁법)의 목적

▷ 사업자의 경쟁의지 보호

▷ 시장지배력 행사에 의한 경쟁제한 방지

◆ 카르텔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

▷ 사업자의 독자적인 의사결정 박탈

→ 경쟁자를 이기려는 경쟁의지 소멸

▷ 다수 사업자의 결합에 의한 시장지배력 형성

→ 경쟁제한적 목적으로 행사될 위험성 농후

2 입찰담합 금지규정

공정거래위원회

2 입찰담합 금지규정

◆ 카르텔의 본질

▷ 시장행위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때 수반되는 경쟁의 위험을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상호 제약을 통하여 회피하는 것

◆ 카르텔 규제원리

▷ 사업자는 자신의 시장행위를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함

▷ 경쟁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한 인위적인 행위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대상

7

공정거래위원회

2 입찰담합 금지규정

◆ 입찰담합이란 2 이상의 사업자가 낙찰자, 투찰가격 등 입찰에서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함

〈 성립요건 〉
① 둘 이상의 사업자
② 입찰에서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합의
③ 경쟁제한성

◆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제재 외 형법상 입찰방해죄* 등으로도 처벌 가능

* 위계, 위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면 성립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 제재건수(2015~2019)>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건 수	66	39	50	138	56	349

8

공정거래위원회

2 입찰담합 금지규정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 입찰담합은 종래 주로 가격담합(제1호), 물량담합(제3호), 시장분할(제4호)의 한 유형으로 처벌했지만, 2007년 8월 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카르텔 유형(제8호)으로 규정

9

공정거래위원회

2 입찰담합 금지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경매·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의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과 관련한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입찰담합의 유형 및 내용과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규정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을 제정·운용

10

2 입찰담합 금지규정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19. 11.)

4.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2)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함

* 과거 5년간의 기간 산정: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위원회 시정조치일**로부터 **과거 5년**으로 역산하되 초일을 산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실효성 강화>

☞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 단체)는 **즉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

* 기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로 규정

☞ 기산일을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하여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

3 입찰담합의 유형 및 적발사례

3

입찰담합의 유형 및 적발사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서 5가지의 입찰담합행위 유형을 제시

(1) 입찰가격 담합

(2)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3)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4) 수주물량 등의 결정

(5) 경영간섭 등

☞ 지침은 가장 전형적인 입찰담합 유형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므로,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입찰담합으로 제재될 수 있음

3

입찰담합의 유형 및 적발사례

(1) 입찰가격 담합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행위

예시

- ❖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 ❖ 사업자들 간에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의 교환·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 ❖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하는 행위
- ❖ 발주처의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예정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고의적으로 유찰**시키는 행위
- ❖ **사업자단체**가 입찰가격을 결정하여 관련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1

지에스건설㈜ 발주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담합(2018.10.)

법 위반개요

❖ 5개 사업자는 A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금액을 공동으로 결정하는데 합의

❖ 발주처가 사전에 배부한 '세부 공사항목 및 항목별 수량이 기재된 내역서'에 A사가 나머지 4개사의 1,058개 각 항목의 단가 및 금액을 대신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 들러리사는 그대로 제출

명칭	규격	단위	설계량	단가	금액
편성단위2 : 005 신축타워					
소공종 : 11 전력제어설비공사	Activity : 0100 전력제어배관				
경제전선관(노출)	아연도 16 C	M2	119	1,424	169,456
경제전선관(노출)	아연도 22 C	M2	736	1,928	1,419,008
경제전선관(노출)	아연도 28 C	M2	273	2,569	701,337
풀박스	200 x 200 x 100	EA	4	4,156	16,624
풀박스	300 x 300 x 100	EA	4	6,891	27,564
450/750V HFIX WIRE (IEC)	HFIX 2.5㎟(1.78MM)	M2	78		
0.6/1KV F-CV CABLE (IEC)	2Cx2.5㎟	M2	37		
0.6/1KV F-CV CABLE (IEC)	3Cx6㎟	M2	402		
0.6/1KV F-CVV CABLE	F-CVV 3Cx1.5㎟	M2	231		

조치유형

시정명령(9개사), 과징금 부과(9개사 10억 원), 법인 고발(1개)

15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2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 공사 입찰담합(2017.6.)

법 위반개요

❖ 4개 사업자는 4개 공구에서 각각 1개 공구씩 낙찰받을 수 있도록 공구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및 투찰금액을 합의

❖ 들러리 3개 사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투찰하여 저가 투찰 판정 기준에 반영되는 평균 투찰 금액을 낮추면 낙찰받을 1개 사가 이를 이용하여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입찰자들보다 낮게 투찰하는 방법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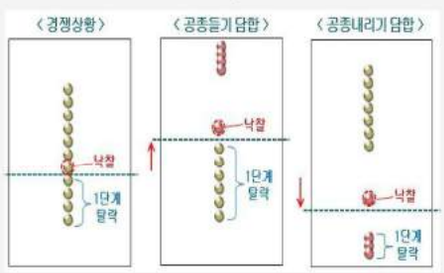

조치유형

시정명령(4개사), 과징금 부과(4개사 701억 원)

16

3 입찰담합의 유형 및 적발사례

(2)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예시

❖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수주 희망자 중에서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

►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입찰참가자들은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입찰가격으로 투찰

► 낙찰예정자는 **협조의 대가**로 차기공사 발주시 낙찰 협조, 금품 지급 등 이익을 공여하거나 이익 공여를 약정

❖ 특정 입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여 낙찰을 받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

❖ 공사를 **교대로 수주**하기로 하거나, 사업자별로 수주실적 등을 정리하여 **낙찰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 또는 이에 협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심결례 1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및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 공사 입찰담합(2014. 6.)

법 위반개요

❖ 6개 건설사들이 한 모임에서 2개 공사의 낙찰예정 대표사 및 컨소시엄 참여자, 각 공사의 들러리사를 동시에 합의

<각 공사별 합의내용>

공사명	낙찰		들러리		입찰 미참여*
	대표사	컨소시엄	대표사	컨소시엄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A사	B사, C사	E사	D사	F사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D사	E사, F사	B사	C사	A사

* 입찰 미참여사도 합의에 참가

조치유형

시정명령(6개사), 과징금 부과(6개사 총 105억 원), 6개 법인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2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담합(2018. 8.)

법 위반개요

❖ 7개 회사는 '11년~'16년 기간 동안 5차례 발주된 7개 권역별 입찰에서 A업체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수급체 주관사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합의

❖ 압도적 경쟁력을 가진 A업체는 입찰제도 변경 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업체들은 안정적으로 사업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권역별로 합의

* 주관사 낙찰 권역을 7개에서 3개로 제한(`11년)

- 6개사는 들러리 참여 대가로 A업체와 공동수급체로 낙찰

구분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6권역	7권역
낙찰	A						
	-	-	D	C, D	-	C	B, D
탈락 (들러리)	B	C	C	B	C	C	C,E

조치유형

시정명령(7개사), 과징금 부과(7개사 총 204억 원),
법인 7개, 개인 3명 고발

19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3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2019. 4.)

법 위반개요

❖ **통신 4개사**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12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불참**하는 방식으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

❖ **낙찰예정자**는 **높은 낙찰률**로 낙찰 받고, **들러리업체**는 낙찰예정자로부터 **회선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회선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대가**를 지급받음

- 합의이행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2개 회사로부터 동시**에 회선을 **임차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담합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임차할 회선 물량을 **낙찰자와 합의가담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 (1차)**한 후 다시 **일부 회선을 또다른 합의가담 사업자와 임차(2차)**하여 매출을 발생시켜 주는 **치밀한 방식**을 활용

조치유형

시정명령(4개사), 과징금 부과(4개사, 총 133억 원)
법인 1개사 고발

20

3 입찰담합의 유형 및 적발사례

(3)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유도하는 행위

예시

- ❖ 당해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참가자들이 모두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유찰시키거나**,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 ❖ 특정 사업자의 수주를 목적으로 몇몇 사업자들이 공모하여 들러리 형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하여 특정 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봉쇄하여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 ❖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기준 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당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거나 대외 공표함으로써 입찰참여를 방해한 후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21

3 입찰담합의 유형 및 적발사례

(4) 수주물량 등의 결정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간 배분에 관하여 결정하는 행위

예시

- ❖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가자간 수주물량 배분 방법, 배분비율 등을 결정하는 행위
-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물량 배분 등의 결정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기타 불이익 제공 등의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
- ❖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량만 응찰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수주를 유도하는 행위

22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1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 지도제작 용역 입찰담합 (2018. 5.)

법 위반개요

❖ 14개사가 '09년~'13년 기간동안 발주된 37건의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 낙찰받을 공동수급체를 사전에 정하고 다른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

- 14개사는 사전에 전체 사업에 대한 개별 업체의 지분률 합의
- 입찰 후 전체 입찰의 계약금액 합산하여 합의된 지분율보다 계약금액이 큰 업체가 작은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보상
- 그 결과, 입찰참가 업체 수가 줄어들고, 투찰가격이 상승

2013년 담합이 이루어진 입찰의 개찰결과

사업지구	입찰참가업체 수	낙찰사	낙찰률
대전시	3개사	엠아이지니어링	85.156%
울산시	3개사	네이버시스템	84.394%
제주시	5개사	새한항업	84.653%
삼척시	5개사	제일항업	84.382%
화성시	6개사	신한항업	84.936%
전주시	6개사	삼부기술	84.413%

2013년 담합 종료 후 경쟁이 이루어진 입찰의 개찰결과

사업지구	입찰참가업체 수	낙찰사	낙찰률
전남·제주지구	9개사	한국에스지티	83.142%
경남지구	9개사	삼아항업	83.482%
경북지구	9개사	네이버시스템	83.148%
강원지구	9개사	중앙항업	83.062%

조치유형

시정명령(14개사), 과징금 부과(14개사 총 96억 원), 법인 고발(11개사)

23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2

대한적십자사 발주 혈액백 입찰담합(2019. 7.)

법 위반개요

❖ 2개사가 '11년~'15년 기간동안 발주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7: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

- 7:3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6(2011년) 및 10:5(2013, 2015년)로 나누어 입찰에 참여
- 합의 결과 99% 이상의 낙찰률로 낙찰(비담합기간 66.7%)
- 계약연장 규정에 의해 2015년 입찰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합의의 효과가 2018년 5월까지 지속됨

<2011년~2018년 입찰별 투찰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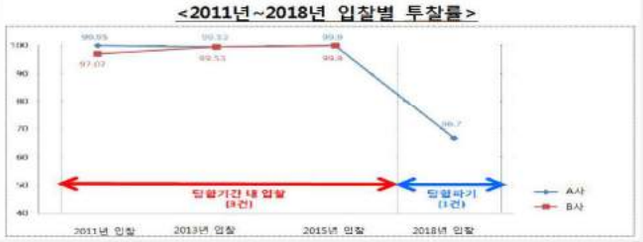

조치유형

시정명령(2개사), 과징금 부과(2개사 총 76억 원)
법인 1개사, 개인 1명 고발

24

3

입찰담합의 유형 및 적발사례

(5) 경영간섭 등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과 관련한 사업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예시

- ❖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수주물량의 일부를 특정 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주거나, 특정 사업자로부터 자재 구입을 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 ❖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 일부를 기부금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특별회비로 납부하게 하여 담합이익의 일부를 공동 사용하거나 배분하는 행위
- ❖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입찰가격에 관한 목표를 부여하거나 수주예정자 결정을 위하여 입찰참여 여부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5

공정거래위원회

4

합의의 의의 및 추정

26

4

합의의 의의 및 추정

합의의 의의

◈ **합의 : "2 이상의 사업자 간의 의사의 합치"**

▶ 합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

▶ **합의만**으로도 위법(**실행 안 해도 위법**)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도 해당

▶ 카르텔의 은밀화, 지능화로 합의증거 확보에 어려움

☞ **합의추정제도 도입**

4

합의의 의의 및 추정

◆ 공동행위란 경쟁관계에 있는 독립된 사업자(economic unit) 사이의 합의를 의미

◆ 경제적 동일체를 구성하는 회사들은 법인격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실질상 하나의 사업자 내부의 합의에 불과

◆ 입찰담합의 특수성

▷ 입찰경쟁에서는 참가자의 청약에 기초한 발주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승자(winner)가 결정

▷ 경제적 동일체를 구성하는 회사들이 독자적인 입찰참가를 통해 경쟁관계를 가장할 경우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것처럼 발주자를 기망하여 입찰경쟁이 무력화

⇒ 입찰에서 경쟁관계의 가장은 효과적인 담합수단으로 기능

공정거래위원회

4 합의의 의의 및 추정

◆ 명시적 합의 : 대화, 서면 등 언어적 수단에 의한 동의 교환

◆ 묵시적 합의 : 비언어적 수단에 의한 동의 교환 (윙크 등)

▷ [EU판례] 합의 불참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함이 없이 합의가 이루어진 모임에 참석한 행위

⇒ 다른 참석자들에게 자신도 합의에 가담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합의 존부는 객관적으로 교환된 의사의 내용에 따라 판단

▷ 의사표시를 한 실제 동기나 내심의 의사는 판단과 무관

29

공정거래위원회

4 합의의 의의 및 추정

◆ 사업자의 담합전략 변화

▷ 명시적인 합의문과 같은 직접증거를 남기지 않음

▷ 정보교환 등 묵시적인 담합수단을 사용

◆ 경쟁당국의 대응

▷ 직접증거 없이도 정황증거를 통해 합의를 추정하는 법리 개발

▷ 정황증거를 분류하고 증거가치 판단기준을 마련

* 직접증거 : 합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합의서, 합의인정 진술 등)

* 정황증거 : 합의가 존재하였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증거

30

공정거래위원회

4

합의의 의의 및 추정

합의의 법률상 추정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 〉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⑤ 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합의 추정 요건

◈ **행위의 외형상 일치(공동행위의 외관)**
⇒ **가격인상 폭 및 시기, 입찰가격, 투찰률 등의 일치**

◈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 있는 정황증거 (Plus Factor)**

31

공정거래위원회

4

합의의 의의 및 추정

정황증거의 종류

◆ **접촉증거(contact evidence)**
▷ 사업자들간 의사연락 또는 접촉사실 (전화, 회의, 모임 등)

◆ **행위증거(firm conduct evidence)**
▷ 동일 또는 유사한 투찰률 등 외형상 일치, 공동행위의 외관
▷ 단독으로 행할 경우에는 스스로의 이익에 반하지만 공동으로 행할 경우에는 참가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
▷ 합의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행위

◆ **성과증거(industry performance)**
▷ 비정상적으로 높은 낙찰률, 안정적인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등

◆ **시장구조증거(market structure)**
▷ 시장집중도 높음(입찰자수 적음), 진입장벽 높음(입찰참가자격 제한), 시장투명성 높음, 동질적인 제품 등

◆ **담합조장행위(facilitating practices)**
▷ 정보교환, 가격공표, 운송비 균등화, 제품표준화 등

32

심결례

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 입찰담합(2018. 10.)

법 위반개요	❖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식 입찰에서 A, B 2개사는 사전에 A를 낙찰예정자로, B를 들러리로 결정하는데 합의 ❖ A사가 B사의 설계공모안을 대신 작성하였음이 여러 정황증거를 통해 인정 - CD 표지양식 동일, 설계도면 제목 오류 동일, 관련 법규명 기재 오류 동일, 설계공모안의 파일 작성자명 일치 등 외형 일치와 다수 정황증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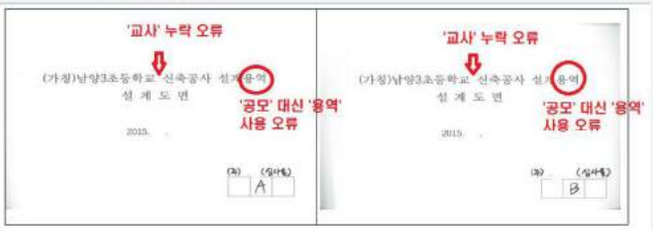
조치유형	시정명령(2개사), 과징금 부과(2개사 3,600만원)

5 입찰담합 제재조치

5
입찰담합
제재조치

입찰담합 제재조치의 유형

조치유형	세부내용
시정조치	☞ 법 위반행위 중지 또는 금지 명령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
과징금 부과	☞ 관련매출액의 10% 이내 (입찰담합은 계약금액) ☞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 원 이내
형사고발	☞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도 고발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기타	☞ 발주기관에 법 위반사실 통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 공적인 제재수단 이외에 발주기관이 입찰담합 참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적집행이 증가하고 있어 입찰담합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5
입찰담합
제재조치

시정조치

〈공정거래법 제21조〉

제21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입찰담합과 관련한 협정의 파기, 협정을 파기한 사실의 철저 주지, 입찰담합행위의 반복 금지, 시장을 통한 정보수집의 경우를 제외한 가격 및 생산량에 관한 정보교환 금지, 법 위반사실의 공표 등

❖ 입찰담합에 의한 최종 낙찰자뿐만 아니라 협력한 사업자(들러리)도 담합 참가자로 간주되며 위원회의 조치내용에 있어서 차이 없음

5
입찰담합 제재조치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법 제22조 〉

제22조【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봄

☞ **낙찰을 받지 못한 들러리, 합의에 의한 불참자도 과징금 부과 대상**
(다만, 들러리 수(N)에 따라 (N-2)/N 범위 내 감액 가능)

☞ **낙찰계약이 이행되어 실제 매출이 발생했는지를 불문**

37

공정거래위원회

5
입찰담합 제재조치

고발

〈 공정거래법 제66조 〉

제66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 공정거래법 제70조 〉

제70조【양벌규정】법인(법 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정거래법 제71조 〉

제71조【고발】① 제66조(벌칙) 및 제67조(벌칙)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 고발하여야 한다.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38

공정거래위원회

6

입찰담합 감시수단

39

공정거래위원회

6

입찰담합 감시수단

입찰담합 징후분석 및 입찰정보검색시스템

◆ '09년부터 입찰담합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하여 조달청 등 12개* 공공기관과 입찰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 중

* '21년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 추가 예정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법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의 입찰정보를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제출

▷ 입찰참가 사업자수 20개 이하 & 건설공사 50억 원 이상, 물품·용역 1억 원 이상인 입찰

* '19년 3만 여건의 입찰정보를 공정위에 제출

◆ 입찰담합의 여러 징후(낙찰률, 입찰자수, 입찰참가제한 여부 등)를 고려하여 의심업체 선별 후 조사필요성 판단

40

6

입찰담합 감시수단

발주기관별 담합감시시스템

◆ 총 8개 발주기관에서 자체 담합감시시스템 운영 중

▷ 담합의심 건으로 분류될 경우 자체감사 또는 조사 의뢰

2013년	2014년	2015년
한국전력공사	조달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 발주처에 대한 정기적 교육, 발주처와 감시·적발 협의 채널 구축·운영 중

41

감사합니다

42

Ⅲ.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판례 소개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판례 소개

2020. 12.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김 의 래

Ⅰ.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집행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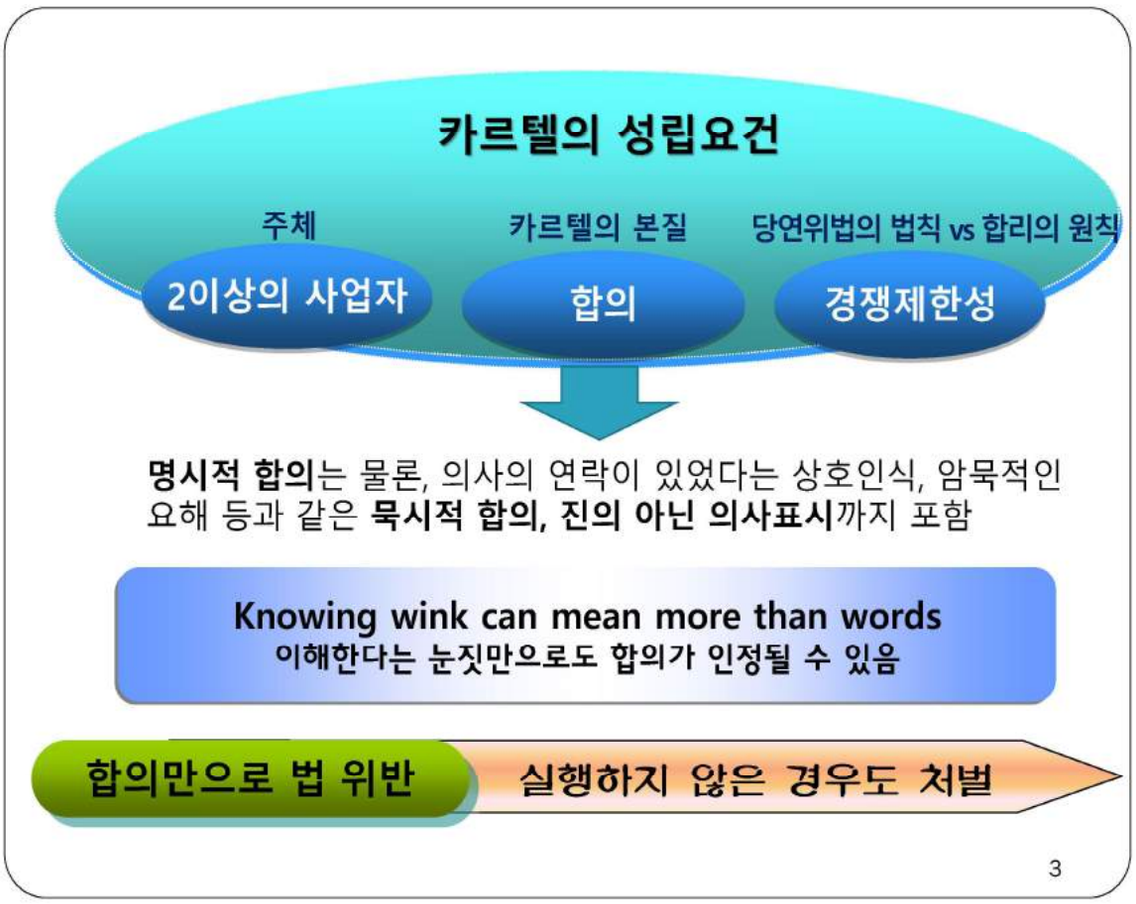
카르텔의 성립요건
주체
2이상의 사업자
카르텔의 본질
합의
당연위법의 법칙 vs 합리의 원칙
경쟁제한성
명시적 합의는 물론,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는 상호인식, 암묵적인 요해 등과 같은 묵시적 합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까지 포함
Knowing wink can mean more than words
이해한다는 눈짓만으로도 합의가 인정될 수 있음
합의만으로 법 위반
실행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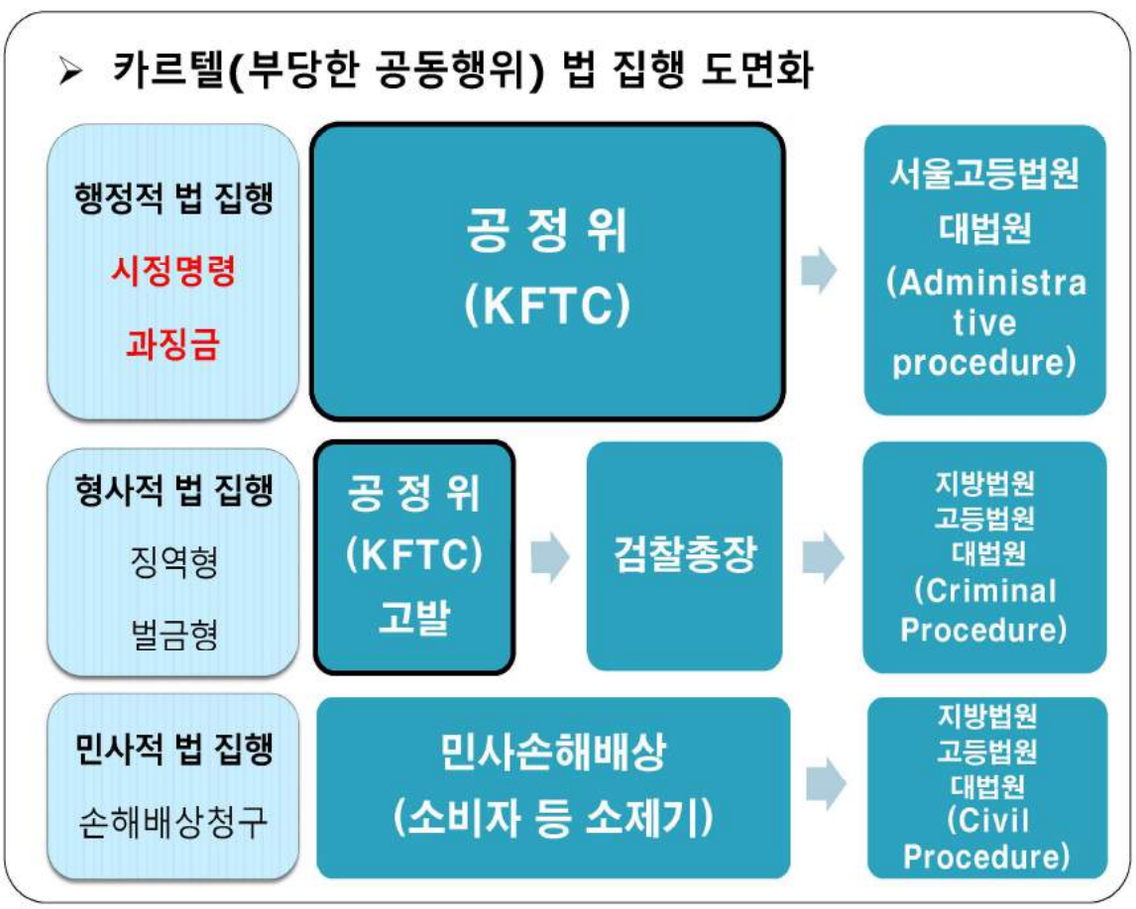
카르텔(부당한 공동행위) 법 집행 도면화
행정적 법 집행
시정명령
과징금
공 정 위
(KFTC)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Administrative procedure)
형사적 법 집행
징역형
벌금형
공 정 위
(KFTC)
고발
검찰총장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Criminal Procedure)
민사적 법 집행
손해배상청구
민사손해배상
(소비자 등 소제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Civil Procedure)

Ⅱ. 판례에서 인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성립요건

5

1.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합의의 대상

가격담합	•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인하액(율)을 결정하거나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 요율, 화물운임, 유류할증료, 연체이자율 차이, (월정액 금액제)상품제공수
거래조건담합	•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 • 할인율, AS기간설정, 탄산음료 리필서비스, 손보사 긴급출동서비스
공급제한	• 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량, 출고량, 수송량을 할당, 그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 • 시장점유율 유지 담합, 구매비율 담합, 가입자수 분할 담합 등
시장분할	•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할당하거나 이를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게하는 행위
설비제한	• 공동으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합의의 대상

종류·규격제한	• 특정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용역을 생산 또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자습서 등 규격·체제 · 포장 · 운송 등을 통일한 담합 건, 건설사의 설계상 공법 및 설비 제외 합의 담합 건 * 경쟁의 합리화, 생산능률 향상 등에 기여하는 경우
공동회사 설립	•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
입찰담합	•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공동으로 할 것을 합의
타사업자 사업활동 제한	• 영업장소의 수, 위치 제한, 연구 및 기술개발 제한, 직원채용제한 등

7

1.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담합의 주체 관련

◇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면, 법인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법인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음**

* 원고(법인) 소속 직원으로서 입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조○○이 이 사건 각 공동행위에서 들러리 합의를 한 경우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공동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법 2018.10.10. 선고 2018누35393 판결]

◇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이르게 된 것은 추후 이루어질 변압기 입찰에서 H사의 도움을 받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경쟁업체 상호간에 입찰에서 공동행위를 통해 낙찰 받은 경우 그 이익은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의 과장 직급을 가지는 직원 개인인 김 △▽ 이 단지 친분이 있는 H사 직원의 부탁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지휘계통을 무시한 채 독자적인 판단 하에 임의로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한 후 실제로 투찰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법 2018.8.16. 선고 2018누39524 판결]

8

1.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다른 사업자(2 이상의 사업자) 요건 관련

◇ 사업자단체라 하더라도 정부조달계약이나 단체수의계약과 같은 일정한 거래에 관하여 사업자단체가 직접 거래의 당사자로 거래에 참여한 경우, 사업자단체는 사업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사업자단체의 그 거래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법을 적용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두18079 판결 등]

◇ A조합이 개별 사업주체로서 활동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점, 각자 자신의 명칭으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입찰행위를 하고 발주자와 입찰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A조합은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단체가 아니라 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한 것임
[서울고법 2018 8 23 선고 2017누90188 판결]

◇ A사와 원고(B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甲이 A사와 C사간 입찰담합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고 원고의 A사 컨소시엄 참가를 결정하였다면 甲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원고 역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가한 것이라 봄이 상당
[서울고법 2018 10 5 선고 2017누90638 판결]

9

1.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담합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담합 성립

➢ 원고A사가 공동행위 관련 **합의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각 합의에 직접 참여한 계열사B사 직원을 통해 이 사건 합의 결과를 전달받고 합의대로 이행**한 점

➢ 다른 가담자도 자신의 **계열회사 직원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후 계열회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전체가 공동행위에 참여한 점**

➢ 이 사건 공동행위의 **다른 가담자들도 모두 원고가 합의에 참여하여 함께 단가를 인하하였다고 인식한 점**

⇒ **적어도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하여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법 2017.12.13. 선고 2016누58712 판결]

10

1.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명시적 합의가 아닌 경우도 담합 성립

◇ 실질적인 경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적격심사제 입찰에서는 최대한 적격 최저투찰률을 겨냥하여 투찰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 투찰한 것은 일반적인 투찰형태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나타날 수 없는 형태임
[서울고법 2017.12.21. 선고 2017누44574 판결]

◇ 기본합의에 따라 각 입찰에서 기존 계약자가 낙찰될 수 있도록 협의하면서 기존 계약선사의 명시적인 존중 요청에 대하여 원고가 해당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면 그 자체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것임
[서울고법 2018.9.13. 선고 2017누74025 판결]

11

1.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명시적 합의가 아닌 경우도 담합 성립

◇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구성하는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연락은 반드시 모든 참여 사업자들이 일회적으로 모여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와 같은 명시적인 형태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친 부분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사업자들 사이에 그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암묵적인 요해가 형성된 정도로도 충분함

✓ 원고가 D사 김@@ 이사를 통하여 이 사건 제1, 2 합의에 대한 동의 의사를 개진하는 등 순차적인 의사 연락한 점, 다른 사업자들도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다고 인식한 점, 위 합의에 따라 그대로 실행한 점

→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한다는 암묵적인 요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67503판결]

12

1.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정보교환을 통한 공동행위 성립의 판단기준

◇ 정보교환만으로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음 기준에 해당할 수록 합의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음(판례)

① (시장의 구조와 성격) 과점화, 집중화되어 있는 시장, 제품의 규격이나 품질 등에 있어서 동질성이 큰 시장 등에서 경쟁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을 통해 해당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경우

② (정보의 대상) 교환되는 정보가 일반적으로 기업의 비밀에 속하고 경쟁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인상계획이나 인상내역과 같은 정보인 경우

③ (정보의 내용) 정보의 대상이 되는 각 제품의 품목, 가격인상율(폭)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

④ (정보교환의 시기 및 방법) 정보교환의 시점이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가격인상을 확정하기 이전 단계이거나 시장에 정보가 공개되어 알려지기 이전이고, 정보교환이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⑤ (정보교환의 주체) 정보교환이 소비자를 배제하고 일부 관련사업자 사이에 은밀하게 폐쇄적으로 교환되고,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지점의 직원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가격결정 업무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임직원간에 이뤄지는 경우

13

1.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경쟁입찰에서 정보교환 등 주장

◇ 입찰담당자들의 투찰수량에 관한 대화는 단순정보교환을 넘어, 그들 사이의 의사 연락 하에 각 투찰 수량을 확인하고 그 수량대로 투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 원고의 입찰의 연간단가계약 방식에 관한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는 주장 배척
[서울고법 2019 4 25 선고 2018누64803 판결]

◇ 한정된 가격의 범위 내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찰을 받을 품목에 대해서 배분 합의를 하고 그것에 맞게 입찰가격 정보를 교환하면서, 필요한 경우 낙찰 받을 품목을 다른 업체로 넘겨준 경우
→ 이미 경쟁입찰의 취지를 벗어난 것

* 발주처가 입찰과정에 단가인상률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법 2018.7.25. 선고 2017누68457 판결]

14

2. 공동행위의 시기 · 종기 및 개수

종기(합의 탈퇴)

➢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참조]

15

2. 공동행위의 시기 · 종기 및 개수

종기(합의 탈퇴)

◇ 장기간에 걸친 공동행위 기간 중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 정상적인 경쟁입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쟁입찰 이후로도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공동행위가 지속된 이상 합의가 단절되었거나 파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누34403 판결]

◇ 일부 기간 동안 종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기간 동안 합의가 지켜지는지 상호 감시하고 합의를 어긴 경쟁사업자에 대해서 항의하기도 하였다면 공동행위가 파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9. 2. 8. 선고 2016누71753 판결]

16

2. 공동행위의 시기 · 종기 및 개수

공동행위 개수

- 일반적으로 가격담합의 경우, 수회의 합의 중에 일시적으로 사업자들의 가격인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사업자들의 **명시적인 담합파기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합의가 파기되거나 종료되어 합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6339판결]
-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라 그 **실행과정에서 수회 회합을 가지고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판매조건 등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임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판결]

17

3. 부당한 공동행위 정당성 관련

행정지도가 담합 성립 내지 부당성 영향 여부

- **사업자들이 행정지도를 기화로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것은 담합에 해당**
  - ✓ 공동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든지 또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로 인하여 친경쟁적 효과가 매우 큰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공동행위의 부당성이 부정된다 할 것**
    [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26117 판결]
  - ✓ **정부 - 업계간 상생협약**이 **법령에 근거한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행위가 상생협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법 2017.3.30. 선고 2016누68917 판결]
  - ✓ 행정지도에 의하여 가격 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외형이 존재한 경우에도 합의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행정지도의 수준을 넘어서 사업자들이 자발적인 행위에 의하여 공동행위에 이르렀다면 합의 인정됨** [서울고법 2015. 6. 10. 선고 2013누45876 판결]

18

3. 부당한 공동행위 정당성 관련

입찰담합의 경쟁제한성 유무

➢ **(합의한 공구에서 낙찰 못 받은 경우)** 다른 입찰참가자들의 실제 투찰행태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공확률이 100%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낙찰자 또는 투찰률을 사전에 결정하는 합의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 사업자들이 결과적으로 합의한 공구에서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함
[서울고법 2018.5.30. 선고 2017누62374 판결]

➢ **설계부문에서는 경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투찰가격을 합의**함으로써 가격경쟁이 전적을 배제되었다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 중 설계만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불완전한 경쟁이** 되었음
[서울고법 2015.12.11. 선고 2015누42291판결 등]

19

3. 부당한 공동행위 정당성 관련

입찰담합의 경쟁제한성 유무

➢ 입찰담합에서 **시장점유율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 내지 후발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담합에서의 역할이 작지 않고 그로 인한 경쟁제한의 효과도 상당
[서울고법 2016.1.8.선고 2014누61851판결]

➢ **홀로 입찰에 참여할 것이 예상되었다고 하더라도 들러리를 내세워 낙찰자를 정하는 행위**는 재입찰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진입 가능성을 봉쇄한 것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임
[서울고법 2015.11.6.선고 2015누41168판결]

➢ 입찰담합에 가담한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공동행위와는 달리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법 2017.8.17.선고 2017누32236판결]

20

3. 부당한 공동행위 정당성 관련

대항카르텔의 효과

➢ 납품업체들은 자신들이 점유율 약 100%를 차지하는 이 사건 수요처들에 대하여 **가격 인상률 및 인상시기 등에 대하여 사전합의 및 실행을 한 것**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대항 카르텔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동행위가 **대항 카르텔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대항 카르텔이 반드시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킨다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이는 장기적으로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유인을 약화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저하할 가능성이 있음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요독점시장에서 공급자들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합을 허용하는 경우 수요독점시장에서는 담합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이는 필연적인 가격 상승효과를 발생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서울고법 2017. 7. 12. 선고 2016누57474 판결]

21

4. 자진신고 관련

자진신고(리니언시) 요건 및 효과 등

➢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에는 확인서나 진술서 등 당해 공동행위 관련자들의 진술을 담은 서류 등도 포함되며, 이미 제출된 증거들의 증명력을 높이거나 조사단계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데 이바지하는 증거들도 모두 포함됨** [서울고법 2012.3.21.선고 2011누26239 판결 등]

➢ 자진신고 회사의 직원이 **자진신고 이후 공정위의 공동행위의 직접적인 물증이 되는 이 사건 합의 당사자들과의 통화 녹음파일 및 이를 녹취한 파일들을 삭제**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증거인멸행위가 자진신고 개시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자진신고 개시 시점에 불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자진신고 그 자체가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대법원 2018.7.11.선고 2016두46458 판결]

22

5. 기타 (과징금 감경, 가중, 조사방해)

➢ '**조사협조**에 있어 **관련 자료의 제출시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주요 고려사항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법 2012.4.12.선고 2011누27584판결]

➢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시인한 자와 부인한 자 사이에 어느 정도 차등을 두는 것은 재량의 범위 내의 행위
[서울고법 2007.9.19.선고 2006누29692 판결]

➢ 상급자 지시에 따라 서류를 타 부서로 옮기던 중 적발된 점, 영업 관련 내용이 저장된 PC를 교체하던 중 적발된 점, 현장조사 종료 후 4대의 PC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순 점 등을 고려하면 조사방해 가중규정의 적용을 받기에 충분하고 실제로 조사가 방해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음
[서울고법 2017.1.12.선고 2016누53069판결, 대법원 2020.11.12.선고 2017두36212판결]

❖ (조사방해 인정 유사사건) 조사공무원이 공동행위를 부인하고 있던 H사에 추가 현장조사를 위해 사무실에 진입하자 영업본부장의 지시(쓸데없는 자료가 있으면 치워라)에 따라 직원들이 가방, 수첩, 결재판 등을 여자화장실, 지하주차장 등으로 옮긴 행위(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치운 자료를 전부 가지고 올라와서 조사공무원에게 주었다고 주장)
[서울고법 2017.1.12.선고 2016누53182판결, 대법원 2020.11.26.선고 2017두36083판결]

23

Ⅲ. 주요 사례 소개

24

Case1

행위사실 → **제재조치**

H, K

○ 향후 금지 명령
○ 과징금
○ 고발

○ (가격 인상 합의) 두 회사는 1999년 약 15%, 2001년 약 8%, 2002년 약 7.5%, 2008년 약 9% 각각 공장도가격을 인상

○ (점유율 합의) 국내 산업용 ○○시장에서의 양사 점유율을 H 72%, K 28% 비율로 유지하기로 합의

○ (신규사업자 사업활동 방해 합의) 2002년에 ○○시장에 진출한 S사에 대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 대응하였고, 결국 S사는 20시장에서 퇴출

→ 법원에서도 담합 인정 [대법원 2018.7.20.선고 2017두30788판결]
(쟁점 : 과징금 감면·감경 여부)

25

Case2

행위사실 → **제재조치**

○ (가격 인상 합의) T 등 6개사는 2007년 하반기경 합의를 시작으로 약 5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원자재가격 변동시기에 맞추어 출고가격의 인상·인하 폭을 합의

○ 향후 금지 명령
○ 과징금
○ 고발 (법인, 개인)

○ (방식) 대표이사들이 ◎◎ 가격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면, 이 후 영업임원들이 구체적인 변경 시기와 폭을 조율

<주요제품 가격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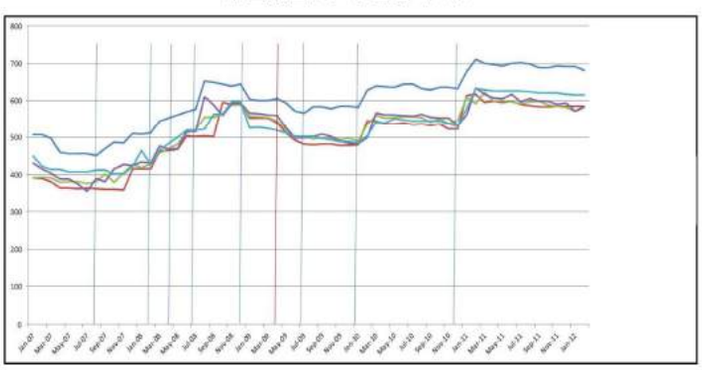

법원에서도 담합 인정

쟁점 : 관련상품시장 경쟁제한성 : 고가제품과 저가제품과의 경쟁관계

26

Case3

행위사실 → **제재조치**

○ (시장점유율 합의) S등 6개 사업자의 본부장들은 2010년 하반기부터 2011. 2. 사이에 수차례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로 합의

✓ 6개 사업자들은 합의한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하여 점유율 초과 또는 미달한 물량에 대한 과부족정산, 과다한 매출할인 통제, 출하량 통계의 진위여부 실사 등 합의를 실행

○ 향후 금지 명령
○ 과징금 (1,992억 원)
○ 고발 (법인, 개인)

[서울고법 2017.10.25. 선고 2016누53441 판결,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7두36212 판결 등]

➢ A업체가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나머지 사업자들인 원고 등 6개사 사이에서 합의가 성립 및 유지·이행된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고, 이 사건 점유율 합의에 따르면 **원고 등 6개사의 기준 점유율 합계가 86.5%**에 이르러,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효과는 작다고 할 수 없음

➢ 명시적인 합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고 등 6개사가 경쟁을 회피하고 **경쟁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각사의 기준 점유율을 정하기로 합의**를 한 이상 기준 점유율의 산정기준에 대한 '합의'는 존재

➢ 현장조사 당시 서류를 타 부서로 옮긴 행위, PC 교체, 조사 종료 후 PC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순 것은 **조사방해** 해당, **과징금 가중은 적법**

27

Case4

행위사실 → **조치**

○ T건설에 대한 원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 중 다른 공동행위 사건에 대해 최초로 감면신청 하였는데 T건설 직원이 다른 공동행위 사업자(H건설)에게 감면신청을 한 사실을 누설

○ 원사건 및 다른 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감면신청을 기각

[대법원 2018.7.26. 선고 2017두46912]

성실협조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일부 인정될 때에도 종국적으로 성실협조의무 위반을 인정함으로써 자진신고자 지위를 부인할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자진신고자 지위의 최종적 인정은 궁극적으로는 일련의 조사협조 과정에 대한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감면제도 남용 방지의 필요성 등을 아울러 참작하면, ... **제6호가 정하는 감면신청 사실 누설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중요한 고려요소로 보아, 자진신고자의 '성실협조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도 있다.

✓ 심사보고서가 송부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면, 이를 알게 된 담합 가담자들은 공정위 조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다 쉽게 수립하고, 경우에 따라 관련 증거를 은닉·변조하거나 자진신고 자체를 담합할 여지 발생

✓ 공정위의 실효적 조사에 대한 방해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게 되고, 담합 가담자 사이에 불신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담합의 형성·유지를 어렵게 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도입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28

Case5

행위사실 → **조치**

○ K사의 직원 Y는 지시를 받아 현장조사일인 2012. 4. 9. 담합 관련 자료가 저장된 자신의 컴퓨터를 포맷

○ 현장조사 직후, 원고의 임원이었던 P는 B사의 직원 O를 만나,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해 정보 교환

○ H사는 1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그 뒤를 이어 K사는 2012 5 18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

○ K사의 감면신청을 기각

[대법원 2018.7.11. 선고 2016두46458 판결]

증거인멸 행위 등이 자진신고나 조사협조 개시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인멸 행위 등은 공정위에 제출될 자료나 진술할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행위의 성실성 여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이전에 증거인멸 행위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개시 시점에 불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그 자체가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29

Case6

행위사실 → **제재조치**

○ D에너지 등 8개사는 07년 12월~13년 4월 기간 동안 강원도 소재 **** 부대가 발주한 4개 입찰 지역의 난방 · 취사용 LPG 공급 입찰에서 지역별 낙찰사, 들러리사, 낙찰 가격 수준 등을 합의·실행

○ 향후 금지 명령
○ 과징금 (59억 원)
○ 고발 (법인)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7233 판결
대법원 2020. 11. 6. 선고 2018두67503 판결]

➢ **수회에 걸친 부분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사업자들 사이에 그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암묵적인 요해가 형성된 정도로도 충분**

➢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로서 성립하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은찰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담하는 것도 가능함** (부작위에 의한 들러리도 성립 가능을 최초로 밝힌 판례)

30

감 사 합 니 다

Ⅳ. 참 고 자 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공정거래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 12. 8., 1996. 12. 30., 1999. 2. 5., 2001. 1. 16., 2004. 12. 31., 2007. 4. 27., 2007. 8. 3., 2017. 4. 18., 2017. 10. 31.〉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3.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1의4. "손자회사"란 자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3.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3의2. "계열출자"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3의3. "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3의4. "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3의5.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3의6. "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3의7. "채무보증"이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5. "임원"이라 함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8.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8의2.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

래조건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여신"이라 함은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4. 12. 31.]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 12. 8., 1994. 12. 22., 1996. 12. 30., 1999. 2. 5., 2004. 12. 31., 2007. 8. 3.〉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 12. 30.〉

1. 산업합리화
2. 연구·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인가사항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6. 12. 30., 1999. 2. 5.〉

④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⑤ 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7. 8. 3.〉

⑥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 및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8. 3.]

제20조 삭제 〈1996. 12. 30.〉

제2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2004. 12. 31.〉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전문개정 1996. 12. 30.]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6., 2004. 12. 31., 2007. 8. 3., 2013. 7. 16.〉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 이후에 새롭게 제19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29.〉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제보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 8. 3., 2016. 3. 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3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16., 2007. 8. 3., 2016. 3. 29.〉

[본조신설 1996. 12. 30.]

[제목개정 2001. 1. 16., 2007. 8. 3.]

제6장 사업자단체

제25조 삭제 〈1999. 2. 5.〉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5. 삭제 〈1999. 2. 5.〉

②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1996. 12. 30., 2007. 8. 3.〉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 12. 8., 1996. 12. 30., 1999. 2. 5., 2004. 12. 31.〉

[2004. 12. 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 1. 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6. 3. 29.〉

[전문개정 1996. 12. 30.]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 · 신고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6.〉

②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調査結果 是正措置命令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0.〉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3. 21.〉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2.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權限의 위임 · 委託)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 · 서류, 전산자료 · 음성녹음자료 · 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2001. 1. 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적용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자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를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특정점포의 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2004. 12. 31., 2007. 4. 13., 2007. 8. 3., 2009. 3. 25., 2017. 4. 18.〉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2. 요구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제9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또는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기관과의 제9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또는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에 한한다)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 사항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신설 2004. 12. 31.〉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 12. 31., 2007. 8. 3.〉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년간 동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2. 31.〉

⑨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 12. 31.〉

[제목개정 2001. 1. 16.]

[법률 제8631호(2007. 8. 3.)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5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0조의2(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 12. 31.]

제50조의3(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이행하거나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12. 31.]

제50조의4(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이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회의의 결정으로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매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해서는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1996. 12. 30.〉

제51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

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71조(고발)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51조의3(동의의결의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개요

2. 관련 법령 조항
3. 시정방안[제51조의2(동의의결)제3항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는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1조의2(동의의결)제2항에 따른 서면의 신청 방법, 의견 조회 방법, 심의·의결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51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51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 제17조의3(이행강제금)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52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2. 5.]

제53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9. 2. 5.〉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96. 12. 30., 1999. 2. 5.〉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53조(異議申請)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9. 2. 5.〉

[본조신설 1996. 12. 30.]

제53조의3(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8. 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동 대리인에게 송달한다.〈개정 2007. 8. 3.〉

③ 제2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07. 8. 3.〉
[본조신설 2004. 12. 31.]

제54조(소의 제기)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2001. 1. 16.〉
② 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4조(訴의 제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1996. 12. 30.〉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등)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6. 12. 30.]

제10장의2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또는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신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2012. 3. 21.〉

[본조신설 1996. 12. 30.]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課徵金納付義務者"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26.〉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본조신설 1996. 12. 30.]

제55조의5(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①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

②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2.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

[본조신설 2004. 12. 31.]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9. 2. 5., 2004. 12. 31., 2007. 8. 3., 2010. 5. 17., 2012. 3. 21.〉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안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1. 1. 16.〉

⑤ 과징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1. 1. 16.〉

⑥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 12. 30.]

[제5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5조의6은 제55조의7로 이동 〈2004. 12. 31.〉]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3. 29.〉

[본조신설 2001. 1. 16.]

[제55조의6에서 이동 〈2004. 12. 31.〉]

제55조의8(결손처분)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과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징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
2.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 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 8. 3.]

제11장 손해배상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2. 31.〉

② 삭제 〈2004. 12. 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19조, 제23조의3 또는 제26조제1항 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9. 18.〉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해당 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9. 18.〉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자의 재산상태
7.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⑤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19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신설 2018. 9. 18.〉

제56조의2(기록의 송부등) 제56조(損害賠償責任)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裁判上 證據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2. 5.]

제57조(손해액의 인정)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12. 31.]

제12장 적용제외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2. 31., 2007. 8. 3.〉

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組合의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2. 5.〉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제61조 삭제 〈1996. 12. 30.〉

제14장 벌칙

제6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 12. 8., 1996. 12. 30., 1998. 2. 24., 1999. 2. 5., 1999. 12. 28., 2001. 1. 16., 2002. 1. 26., 2004. 12. 31., 2007. 4. 13., 2007. 8. 3., 2009. 3. 25., 2012. 3. 21., 2013. 8. 13., 2014. 1. 24., 2014. 5. 28., 2017. 4. 18.〉

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
4.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6.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

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9의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9의3.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한 자

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 12. 8., 1994. 12. 22., 1996. 12. 30., 1998. 2. 24., 1999. 2. 5., 2002. 1. 26., 2007. 8. 3., 2009. 3. 25., 2013. 8. 13., 2016. 3. 29., 2017. 4. 18.〉

1. 삭제 〈1996. 12. 30.〉
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3.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6. 3. 29.〉
6. 제5조(是正措置),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21조(是正措置), 제24조(是正措置), 제27조(是正措置),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 또는 제31조(시정조치)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9.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10.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2002. 1. 26., 2004. 12. 31., 2007. 4. 13., 2007. 8. 3.〉

1. 제8조(持株會社 設立·轉換의 申告)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7항을 위반하여 당해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13조(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삭제 〈2017. 4. 18.〉
5.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자
6. 삭제 〈2004. 12. 31.〉
7. 삭제 〈1994. 12. 22.〉
8. 삭제 〈1999. 2. 5.〉

[전문개정 1992. 12. 8.]

제69조(벌칙) 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한 자 또는 동조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4. 12. 31.〉

② 제62조(祕密嚴守의 義務)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 12. 30.〉

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6. 12. 30., 1998. 2. 24., 1999. 2. 5., 1999. 12. 28., 2001. 1. 16., 2002. 1. 26., 2004. 12. 31., 2009. 3. 25., 2012. 3. 21., 2017. 4. 18.〉

1.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2.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한 자
3.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제2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삭제 〈2009. 3. 25.〉
5.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7. 4. 18.〉
7. 삭제 〈2017. 4. 18.〉
8.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43조의2(審判廷의 秩序維持)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6. 12. 30.〉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 12. 30.〉

④ 삭제 〈2009. 3. 25.〉

⑤ 삭제 〈2009. 3. 25.〉

⑥ 삭제 〈2009. 3. 25.〉

[본조신설 1992. 12. 8.]

제70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71조(고발) ① 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0.〉

③ 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6. 12. 30.〉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2017. 7. 26.〉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⑥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신설 1996. 12. 30., 2013. 7. 16.〉

[전문개정 1992. 12.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53호, 2020. 9. 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3. 31., 2005. 3. 31.〉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6조 본문, 제22조 본문, 제24조의2제1항 본문,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31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과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각각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말하고,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 4. 1., 2007. 11. 2., 2012. 6. 19., 2014. 2. 11., 2016. 9. 29.〉

② 법 제24조의2(과징금)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7. 11. 2., 2014. 2. 11.〉

③ 그 밖에 관련매출액 및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4. 4. 1., 2007. 11. 2.〉

[전문개정 1997. 3. 31.]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24조(공동행위의 인가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7. 3. 31.]

[종전 제24조는 제24조의2로 이동〈1997. 3. 31.〉]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

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 3. 31., 2002. 3. 30.〉

1. 공동행위에 의한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증진등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
2. 공동행위외의 방법으로는 산업합리화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1997. 3. 31.〉]

제24조의3(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 3. 31., 2002. 3. 30.〉

1. 당해 연구·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2. 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3. 연구·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본조신설 1993. 2. 20.]

[제24조의2에서 이동〈1997. 3. 31.〉]

제25조(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불황의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 3. 31.〉

1.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앞으로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2.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이 상당기간 평균생산비를 하회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사업분야의 상당수의 기업이 불황으로 사업활동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 3. 31., 2002. 3. 30.〉

1.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생산방법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2.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효과가 클 경우

제27조(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 3. 30.〉

1.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2.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본조신설 1997. 3. 31.]

[종전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1997. 3. 31.〉]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 3. 31.〉

1.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기술향상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2.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3. 공동행위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

[제27조에서 이동〈1997. 3. 31.〉]

제2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할 수 없다. 〈개정 1997. 3. 31.〉

1. 당해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할 경우
2.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당해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4. 당해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 ①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31.〉

1. 참가사업자의 수
2.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소 소재지

3. 대표자와 임원의 주소·성명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내용
5.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6.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 3. 31.〉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3.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제2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이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중 그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인가증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30일에 공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97. 3. 31.〉

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기 전에 당해 신청내용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7. 3.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신청 또는 변경신청의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1997. 3. 31.〉

1. 신청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2. 공동행위의 내용
3.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5.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당초 인가내용의 변경사항 및 사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신설 1997. 3. 31.〉

④ 제2항의 공시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시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7. 3. 31.〉

1. 의견진술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의견내용 및 의견제출사유
3. 기타 의견진술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당해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3. 31.]

제33조(경매·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본조신설 2007. 11. 2.]

제34조(공공부문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위한 정보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5. 13.〉
1.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른 공기업

② 법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제2항에 따른 입찰 관련 정보의 제출은 해당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의 수가 20개 이하이고,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입찰 : 50억원
2. 제1호 이외의 공사 입찰 : 5억원
3. 물품구매 또는 용역 입찰 : 5억원

③ 법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제3항에 따른 입찰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주기관과 수요기관
2. 입찰의 종류와 방식
3. 입찰공고의 일시와 내용
4. 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

5. 입찰참가자의 수
6. 입찰참가자별 투찰내역
7. 낙찰자에 관한 사항
8. 낙찰금액
9. 유찰횟수와 예정가격 인상횟수
10. 그 밖에 입찰 담합 징후 분석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는 정보

④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낙찰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6. 25., 2020. 9. 29.〉

[본조신설 2007. 11. 2.]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1. 2., 2009. 5. 13., 2011. 12. 30., 2012. 6. 19., 2016. 9. 29.〉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제1호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다. 삭제 〈2008. 6. 25.〉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나.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다. 삭제 〈2008. 6. 25.〉

라. 삭제 〈2008. 6. 25.〉

4.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6.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아니한다.

가. 2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그 중의 한 사업자인 경우

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인 경우

②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 제보내용 등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7. 11. 2., 2016. 9. 29.〉

1. 자진신고자 등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제기,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사건을 분리 심리하거나 분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2.〉

④ 신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정도, 감면제도의 세부운영절차, 증거제출방법 및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 11. 2., 2011. 12. 30.〉

[전문개정 2005. 3. 31.]

제6장 사업자단체

제39조 삭제 〈1999. 3. 31.〉

제40조(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인가등) ①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에 규정한 경쟁제한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경쟁제한행위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31.〉

1. 경쟁제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내용
2. 참가사업자의 기준과 범위

②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제3항·제4항 및 제5항, 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및 제32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의 규정은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 3. 31., 1999. 3. 31.〉

제41조 삭제 〈1999. 3. 31.〉

제42조 삭제 〈1997. 3. 31.〉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54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97. 3. 31.〉

1. 신고인의 성명·주소
2. 피신고인의 주소·대표자성명 및 사업내용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등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31., 2001. 3. 27.〉

②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지정은 사건명, 감정인의 성명,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등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31., 2001. 3. 27.〉

③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은 사건명,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 3. 31., 2001. 3. 27.〉

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등) ①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2항에서 "지정된 장소"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1997. 3. 31., 2001. 3. 27.〉

②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7. 3. 31., 2001. 3. 27.〉

제57조(경비의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3. 31., 2001. 3. 27.〉

제57조의2(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병·인수,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또는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3.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5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본조신설 2005. 3. 31.]

제57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50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9조제1항에 따른 소회의의 결정으로 다시 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이하 이 조에서 "보고·제출명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②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③ 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제23조의4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법 제17조의3"은 "법 제50조의4"로, 같은 조 제1항 및 제7항의 "시정조치"는 "보고·제출명령"으로, 제7항의 "90일"은 "30일"로 본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소회의의 결정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때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9. 3. 12.〉

[본조신설 2017. 9. 29.]

제58조(시정권고절차) 법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31.〉

1. 법위반 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

제58조의2(동의의결된 시정방안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할 때 동의의결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의5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12.]

제59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① 법 제53조(이의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53조(이의신청)제2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53조(이의신청)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장의 범위·구조·점유율·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조사·검토 등 별도의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2.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도의 법리적 분석·검토가 필요한 경우
3. 이의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이의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전문개정 1997. 3. 31.]

제60조(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법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3. 31.]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신설 1997. 3. 31.>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및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 4. 1., 2009. 5. 13., 2016. 9. 29.〉

② 삭제 〈2004. 4. 1.〉

③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1999. 3. 31.]

제61조의2(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5. 3. 31.〉

[본조신설 1999. 3. 31.]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7. 21.〉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7. 21.〉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8.〉

1.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7. 3. 31.]

제63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3. 31.]

제64조(체납가산금 요율) 법 제55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체납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3. 8.〉

[본조신설 2012. 6. 19.]

[종전 제64조는 제64조의2로 이동 〈2012. 6. 19.〉]

제64조의2(독촉) ① 법 제55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1999. 3. 31.]

[제64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2는 제64조의3으로 이동 〈2012. 6. 19.〉]

제64조의3(체납처분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종료의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

[본조신설 1999. 3. 31.]

[제6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3은 제64조의4로 이동 〈2012. 6. 19.〉]

제64조의4(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3. 27.]

[제6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4는 제64조의5로 이동 〈2012. 6. 19.〉]

제64조의5(환급가산금 요율) 법 제55조의7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2012. 6. 19., 2014. 7. 21., 2016. 3. 8.〉

[본조신설 2001. 3. 27.]

[제6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5는 제64조의6으로 이동 〈2012. 6. 19.〉]

제64조의6(결손처분) 법 제55조의8(결손처분)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본조신설 2007. 11. 2.]

[제6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6은 제64조의7로 이동 〈2012. 6. 19.〉]

제64조의7(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12. 3., 2010. 1. 27., 2010. 5. 14., 2017. 9. 29.〉

1.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2. 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 중 신문업(「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문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3.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의 행위 중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4.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의 행위 중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5.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대규모소매점업(매장면적의 합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
6.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

6의2.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7. 법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②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 각호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그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각 행위유형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 3. 31.]
[제6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7은 제64조의8로 이동 〈2012. 6. 19.〉]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9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1. 8.〉
1.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별표 3
2.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 별표 4
3. 법 제69조의2제1항제3호·제5호 및 제2항: 별표 5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그 위반의 정도, 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1. 8.〉
[전문개정 2009. 5. 13.]

제66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7. 3. 31.]

공동행위 심사기준

[시행 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35호, 2015. 10. 23., 일부개정.]

Ⅰ. 목적

이 심사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처리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공동행위의 성립

1. 2 이상 사업자

가.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2 이상의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나.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예외

1) 다수의 사업자를 실질적·경제적 관점에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들 간에 이루어진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항(입찰담합은 제외)에 관한 합의에는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합의에 다른 사업자가 참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의 인정 기준

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법 제2조 제2호의 동일인 또는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당해 사업자들 모두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주식 소유 비율, 당해 사업자의 인식, 임원겸임 여부, 회계의 통합 여부, 일상적 지시 여부, 판매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당해 사안의 성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다만, 관련시장 현황, 당해 사업자의 활동 등을 고려할 때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합의의 존재

가. 합의의 의의

1)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업자간에 공동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합의는 계약, 협정, 협약, 결의, 양해각서, 동의서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

2) 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진의아닌 의사표시라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시〉

갑, 을 및 다른 10개 건설회사 입찰 담당자들이 사전에 모여 공공건물 신축공사입찰에서 을이 낙찰되도록 하기 위해 을은 100억 원 미만의 금액으로 입찰하고 을을 제외한 다른 회사들은 모두 100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하기로 약속하였다. 갑회사 입찰 담당자는 다른 사업자들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심으로는 100억 원보다 낮은 80억 원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을 의사를 가졌으나 겉으로는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 그후 합의와 달리 갑은 실제 80억 원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다. 이와 같이 갑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합의를 한 후 실제 입찰에서 이 합의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합의는 일정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중에서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

4) 공급자들이 아닌 수요자들의 합의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나. 합의의 추정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간의 합의는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암묵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법 제19조 제5항에 추정제도를 두고 있다. 추정이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간접적인 사실만 있는 경우 직접적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일단 정하여 그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2) 2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들 사업자간의 합의에 관한 직접적 증거가 없을 지라도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 양태 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래에 제시하는 사항들은 추정을 보강하기 위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가)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예 1〉 해당 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예 2〉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예 3〉 특정 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 결정을 위한 내부 업무보고 자료에 다른 경쟁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경우

〈예 4〉 특정기업이 가격인상 또는 산출량 감축 의도를 밝히고 다른 경쟁기업들의 반응을 주시한 후 그 반응에 따라 가격인상 또는 산출량 감축을 단행한 경우

나)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예 1〉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예 2〉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다)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예 1〉 수요공급조건의 변동, 원재료 공급원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치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

〈예 2〉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변동 폭이 동일한 경우

〈예 3〉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라)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예 1〉 제품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예 2〉 거래의 빈도가 낮은 시장, 수요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시장 등 공급자의 행위 일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행위의 일치가 이루어진 경우

3) 법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그 행위가 합의에 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Ⅲ.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와 기간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

사업자들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수차례의 합의를 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는 그 개별적인 합의들의 기본원칙을 담거나 토대가 되는 기본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또는 그 개별 합의 들이 사실상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절됨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예 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그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 하여 온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다. 기본원칙에 관한 합의 또는 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한 같다.

〈예 2〉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다. 그 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한 같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간

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

1)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참가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2)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원칙적으로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합의에 정해진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로서 그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한 경우

2) 공동행위의 구성사업자가 합의 탈퇴의사를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실제 그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 탈퇴의 의사표시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1〉 합의 탈퇴의사 표시를 하였으나, 가격인하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 탈퇴의사 표시만으로 공동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예 2〉 합의에 참가한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경우 그 독자적인 가격 결정일을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로 본다.

〈예 3〉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이 있는 등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전월의 마지막 날에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본다.

3) 공동행위가 심의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심의일에 그 공동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Ⅳ.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 유형

법 제 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다. 아래에 예시된 사항은 부당한 공동행위 중에서 흔히 나타나는 법 위반 유형을 제시한 것이므로 예시되지 않은 사항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 '가격'이란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의미하며, 권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수수료, 임대료, 이자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포함된다.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가. '거래조건'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 거래의 장소, 거래의 방법, 운송조건 등과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을 의미한다.

나.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이란 지급 수단,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과 같이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과 관련된 조건을 의미한다.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3호)

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나.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4호)

가. 사업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나. 사업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5호)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별로 설비 총량 또는 신·증설 규모를 정하는 행위, 특정한 장비 도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유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6호)

특정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 또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별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또는 규격을 할당하는 행위, 새로운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7호)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이를 위해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8호)

가. 낙찰예정자 또는 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업자가 낙찰 또는 경락받을 수 있도록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나. 다수의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들이 낙찰 또는 경락받을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전에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를 결정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9호)

가.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유로운 연구·기술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등과 같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나.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들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자신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Ⅴ.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는 공동행위의 성격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한다.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예컨대 가격·산출량의 결정·제한이나 시장·고객의 할당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되는 시장의 구조, 거래형태, 경쟁상황 등 시장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은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함께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예컨대 공동마케팅,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연구·개발, 공동표준개발 등)에는 당해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제1단계 : 공동행위의 성격 및 시장 분석

공동행위의 성격은 공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의 종류(생산·판매·산출량 결정 등) 및 합의의 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가.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

1) 경쟁 제한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공동행위는 직접적으로 관련시장에서 가격을 올리거나 산출량을 감소시키며 다음과 같은 유형이 이에 해당된다.
-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가격을 결정 혹은 변경하는 행위
-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산출량을 결정 혹은 조정하는 행위
-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할당하는 행위
-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입찰가격 또는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

2) 가격·산출량의 결정·조정은 직접적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하며, 시장 및 고객의 제한·할당도 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제한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감소시켜 결국 가격 상승이나 산출량 제한을 초래한다.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는 입찰참여 사업자들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여 낙찰가격을 상승시키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성격상 경쟁을 직접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3) 위에 열거한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공동행위는 관련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행동하면 당해 상품시장이나 지역시장에서 가격·수량·품질 및 기타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 쉽게 발생되고 유지될 수 있다.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 수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공급자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이기 때문에 당해 공동행위가 유지되기는 어렵다.

4) 한편, 어떤 업종의 생산구조, 시장구조, 경쟁상태 등을 분석하여 시장지배력 형성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결국 해당 공동행위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공동행위는 행위 자체가 직접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상승·산출량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분석이 없더라도 시장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을 통하여 위법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예시〉

가평시내 5개 주유소가 휘발유 가격을 같은 폭으로 인상하면서 앞으로 휘발유 가격인하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5개 주유소의 주요 고객은 대부분 가평 시민들이고, 상기 주유소들 외에 가장 가까운 주유소는 반경 20Km이상 떨어진 춘천 또는 대성리에 위치하고 있어, 가평 시민들은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춘천이나 대성리까지 가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평시내 5개 주유소의 합의는 성격상 각 주유소들간 가격, 서비스 등에 관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휘발유 가격을 상승시켜 해당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보다 엄밀한 구체적인 경제분석이 없더라도 일응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한편, 이번에는 46번 춘천방향 국도변의 대성리와 가평사이에 위치한 3개 주유소들이 위와 동일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자. 이 때, 3개 주유소의 주된 고객은 서울에서 춘천 인근으로 여행을 가는 서울시민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46번 국도를 지나며 이들 3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경우 3개 주유소를 이용하지 않고 가평을 지나 위치하고 있는 다른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에는 위의 가평시내 3개 주유소가 담합한 사례보다는 보다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5) 다만, 문제되는 공동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만 있는 공동행위로 분류되는 유형이라도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제적 통합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어 추진되고, 효율성증대 효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관되는 경제적 통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즉, 이 심사기준의 제2단계부터 제4단계까지의 심사절차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경제적 통합"이라 함은 생산, 판매, 구매 또는 연구개발 등의 통합을 의미한다.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제적 통합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중요한 자본, 기술 또는 상호보완적인 자산 등을 결합한다. 가격, 산출량, 고객 등에 대한 단순한 조정 또는 합의는 경제적 통합이 아니다.

〈예시〉

6개의 중소 구두제조 사업자들이 대형 구두제조사업자들에 대항하기 위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유통비용과 광고비용을 절감하고 제품의 상표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라는 상표로 공동마케팅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는 제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합의

도 포함되어 있다. 이 합의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의 공동결정은 효율성 증대를 발생시키는 공동마케팅 수행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제한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서 제2단계부터 제4단계의 심사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한다.

나. 공동행위의 성격상 효율성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가 동시에 생길 수 있는 경우

1) 효율성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가 동시에 생기는 유형의 공동행위로는 공동마케팅,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연구·개발, 공동표준개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이런 종류의 공동행위는 자산·지식·경험의 결합 또는 위험의 배분, 중복비용의 감소 등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때로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하지만 참여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을 유지·창출·증가시켜서 가격 상승, 품질·산출량·혁신노력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3) 당해 공동행위의 성격 분석만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 단계에서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

4) 그러나 공동행위의 성격에 대한 분석만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2. 제2단계 : 경쟁제한 효과 분석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함께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경쟁제한 효과 분석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경쟁제한 효과 분석의 일반원칙

1) 참여사업자들이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행위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유지·창출·증가시켜 가격 상승이나 품질·산출량·혁신노력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2)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시장을 획정하고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을 산정한다. 참여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거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심사를 종료한다(제2-1단계~제2-3단계). 그러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력, 참여사업간의 경쟁제한 수준 등을 분석하여 경쟁제한 효과의 발생여부 및 크기 등을 심사한다.

3)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첫째 요소는 공동행위 참여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지배력의 정도이다. 관련시장에서 사업자들이 보다 큰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당해 공동행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증가한다.

4)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둘째 요소는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간의 경쟁제한의 정도이다. 즉 참여사업자간 독자적 경쟁능력·경쟁동기의 감소수준, 경쟁기회·경쟁수단·경쟁방법의 제한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의 정도가 클수록 당해 공동행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증가한다.

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는 참여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보유와 참여사업자간의 경쟁제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의 수준이 높더라도 참여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통해서도 시장지배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참여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참여사업자들간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면 당해 공동행위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감소된다.

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의 단계별 절차

1) 제2-1단계 :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지배력 존재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장의 획정이 필요하다. 관련시장 획정에는 「기업결합심사기준」에 규정된 "V.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을 참고한다.

2) 제2-2단계 : 시장점유율 산정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총금액 중에서 당해 사업자가 공급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장점유율은 공동행위 수행 당시의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직전사업년도 종료직후로서 직전사업년도의 판매액을 알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text{시장점유율} = \frac{\text{당해 회사의 당해 상품의 국내판매액(수입판매액 포함)}}{\text{당해 상품의 국내 총판매액(수입판매액 포함)}}$$

3) 제2-3단계 : 시장점유율이 20% 이하인 경우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공동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이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포함한다)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당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참여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 심사절차를 거쳐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한다.

4) 제2-4단계 : 시장지배력 심사

가) 참여사업자들이 관련시장에서 보다 큰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당해 공동행위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시장지배력 보유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 (나) 내지 (라)의 요소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일부 요소에 대한 분석만으로도 참여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보유수준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요소에 대한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시장점유율

공동행위 참여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클수록, 시장점유율이 수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될수록 해당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보유 가능성은 증가한다. 한편 최근 수년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하락폭이 클수록 시장지배력 보유 가능성이 감소한다.

다) 해외경쟁 도입수준

관련제품의 수입이 용이하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에 의해 시장지배력이 유지·창출·증가되거나 경쟁제한성이 높은 공동행위가 수행될 가능성이 감소한다. 해외경쟁의 도입수준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수입침투도의 변화 추세
  * 수입침투도 : 내수(생산 - 수출 + 수입) 또는 생산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 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 기타 각종 비관세장벽의 존재 여부

라) 신규진입의 가능성

①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행위로 감소되는 실질적인 경쟁사업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감소한다.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최근 3년간 신규진입 현황 및 변화추세
-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 필요최소한의 자금규모
-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 입지조건
- 원재료조달조건
-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②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사업자
-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 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자

5) 제2-5단계 :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 수준 심사

가)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 심사의 일반원칙

① 이 단계에서는 공동행위 참여사업자간 독자적 경쟁 능력·동기의 증감수준, 경쟁기회·경쟁수단·경쟁방법의 제한여부 등을 분석한다.

② 참여사업자간 경쟁 능력·동기의 감소수준이 미약하고, 경쟁기회·경쟁수단·경쟁방법의 제한 정도가 낮아 관련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참여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유지·창출·증가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며, 경쟁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 교환이 없거나 적절하게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작아진다.

③ 반면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 수준이 높아서 사업자 상호간에 독자적으로 경쟁할 동기나 능력이 상당히 감소하거나, 경쟁기회·경쟁수단·경쟁방법이 제한되거나, 경쟁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교환될 경우에는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④ 심사대상인 공동행위가 실제 수행중이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 수준의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한 요소 중 일부만 분석하거나 제2-5단계 심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 심사시 고려요소

① 합의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제재수단이 있는지 여부

합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고, 특히 이를 통해 합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제한 효과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② 공동행위 존속기간

공동행위의 존속기간이 길수록 참여사업자간 독자적인 경쟁 능력 및 동기를 제한하여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③ 자산에 대한 공동 사용·통제 수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통제하는 자산의 비중과 중요도가 클수록 가격, 산출량 등에 관한 독자적인 의사결정의 가능성이 감소하여 경쟁제한 효과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또한 공동으로 사용·통제하는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대체하기 어려울수록 독자적인 의사결정의 가능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④ 재무적 이해관계 수준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간에 재무적 상호 이해관계(예컨대 채권·채무, 주식의 상호보유 등)의 결합 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자간 경쟁의 동기가 감소하여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⑤ 참여사업자간 경쟁 허용수준

참여사업자간 경쟁을 허용하는 범위가 넓을수록 당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효과는 감소한다. 또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업자 혹은 다른 사업자 단체와의 거래가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이러한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감소한다.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참여사업자간 실질적인 경쟁 상황, 가격·산출량 등 주요한 경쟁 변수에 대한 개별 사업자의 독자적인 의사결정 범위, 공동행위 수행 조직의 임무와 역할 등이 분석되어야 한다.

6) 경쟁제한 효과 분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경우

효율성증대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더라도 이를 능가하는 효율성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비교형량을 통해 당해 공동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기 분석을 통해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효율성증대 효과와의 비교형량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3단계의 효율성증대 효과 분석으로 이행하지 않고 심사를 종료한다.

3. 제3단계 : 효율성증대 효과 분석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함께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효율성증대효과 분석을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공동행위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율성증대 효과

공동행위는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위험 배분, 지식·경험의 공동활용에 의한 혁신 속도 증가, 중복 비용의 감소 등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효율성 증대는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시켜 상품의 가격 하락, 품질·유통속도의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나. 효율성증대 효과로 주장될 수 없는 경우

산출량 감축, 시장 분할 또는 단순한 시장지배력의 행사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절감 등은 효율성증대 효과로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제품·서비스의 품질 저하 등 소비자의 이익 감소를 통해 달성되는 비용절감도 효율성증대 효과로 주장될 수 없다.

다. 효율성증대 효과 심사시 고려요소

경쟁을 촉진하는 효율성은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되는지, 효율성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한지, 효율성의 크기는 어떠한지, 효율성 증대가 소비자 편익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

라. 공동행위와 효율성증대 효과의 인과관계 심사

당해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당해 공동행위의 효율성증대 효과를 인정한다.

마. 효율성증대 효과의 주장 방법

효율성은 검증하거나 수량화가 어렵다. 이는 효율성과 관련된 정보를 오직 공동행위의 참여사업자들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성증대 효과를 주장하는 사업자는 당해 공동행위로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효율성 증대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제4단계 :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의 비교형량

당해 공동행위가 효율성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 양 효과의 비교 형량을 통해 당해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한다. 비교형량에 있어서는 효율성증대 효과가 당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당해 공동행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관련시장에서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가 클수록 이를 상쇄하기 위한 효율성 증대 효과 또한 커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시행 2017. 11. 1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0호, 2017. 11. 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제2항,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제1항·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이하 "자진신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 제도의 세부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진신고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 개시 이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조사협조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당해 공동행위"라 함은 자진신고자 등 또는 조사에 협력(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3.다.(3)의 조사협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그 자진신고 등 또는 조사에 협력을 할 당시 그 대상이 되는 공동행위를 말하며, "다른 공동행위"라 함은 그 외의 공동행위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조사개시 시점) ① 전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원회가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혐의로 1인 이상의 사업자에게 구두,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료제출 요구, 사실관계 확인, 출석 요구 또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때를 조사개시 시점으로 본다.

② 전항의 자료제출 요구 등이 서면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발송한 때를 조사개시시점으로 본다.

제2장 감면 요건 등의 판단기준

제4조(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① 시행령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이하 이 고시의 각 조항 본문에서 법령의 조문 제목은 생략한다)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간에 작성된 합의서, 회의록, 내부 보고자료 등 합의 내용, 성립과정 또는 실행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의 확인서, 진술서 등 공동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 및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3.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② 전항의 증거는 문서, 녹음테이프, 컴퓨터파일 등 그 형태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제4조의2(공동 감면신청) 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동조동항제3호가목 단서의 "실질적 지배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의 관계를 말한다.

1. 감면신청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법 제2조제2호의 동일인 또는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상법」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감면신청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주식소유비율, 당해 사업자의 인식, 임원겸임 여부, 회계의 통합 여부, 일상적 지시 여부, 판매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당해 사안의 성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다만, 관련시장 현황, 경쟁사업자의 인식, 당해 사업자의 활동 등을 고려할 때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동조동항제3호가목 단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인 경우 그들이 함께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속적이고 성실한 협조 여부의 판단) ①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조사가 끝날 때까지"라 함은 "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 까지"를 의미하며,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자진신고자 등이 알고 있는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
2.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 등이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3. 사실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
4. 임직원(가능하다면 전직 임직원 포함)이 위원회의 조사, 심의(심판정 출석 포함) 등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
5. 공동행위와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였는지 여부

② 자진신고자 등이 위원회 심의종료 이전에 위원회의 동의 없이 감면신청 및 행위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진신고자 등이 감면신청 및 행위사실을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거나 외국정부에 알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공동행위 중단 여부의 판단) ①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는지 여부는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합의탈퇴의 의사표시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입찰담합의 경우 당해 입찰이 종료되면 실행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공동행위는 감면신청 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이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이 종료한 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의2(강요 여부의 판단)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2.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시장에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곤란할 정도의 압력 또는 제재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제6조의3(반복하여 위반한 경우의 판단기준)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후단에서 규정한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라 함은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의4(2순위자에 대한 감면 제한 판단기준) 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가항의 2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공동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나항의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날"은 위원회에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3장 감면신청

제7조(감면 신청) ①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 카르텔총괄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leniency @korea.kr) 또는 팩스(044-200- 4444)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자진신고자 등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2. 자진신고자 등이 참여한 공동행위의 개요
3.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
4.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5. 당해 공동행위의 중단 여부

② 2이상의 사업자가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조동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이하 "공동 감면신청" 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동 감면신청인들이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조동항제3호가목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사유
2. 전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공동 감면신청인들이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조동항제3호가목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별적으로 순위를 부여받게 될 경우 공동감면신청인들간 순위

제8조(감면신청의 특례) ① 전조의 신청인은 증거자료의 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기타 신청서와 동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조 각호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도 전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신청인은 그 보정에 필요한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보정 기한은 15일을 넘지 못한다. 다만, 심사관은 신청인이 증거수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요청할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및 진술 확보를 위하여 보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료보정기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보정기한 내에는 당초의 신청시 기재하였던 공동행위의 개요에 관한 사항도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신고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공동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8조의2(구두 감면신청) ① 신청인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제7조 또는 전조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에 의한 감면신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전항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구술에 의하여 질문하고 그 답변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증거제공의 순서 및 접수의 순위) ①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또는 두 번째의 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거제공의 순서는 제10조에 의한 감면신청의 접수시점에 의해 판단한다.

② 자진신고자 등이 제7조 또는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함에 앞서 그 임·직원이 확인서 또는 진술서 등의 형태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제출한 때에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 2인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신청이 감면신청 취하, 제12조 제2항(자진신고자 지위 결정), 기타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에 의하여 감면이 인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다음 신청자가 이전 신청자의 접수 순서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접수순위를 승계하는 신청인은 승계되는 순서에 상응하는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조 동항 제3호 가목의 증거제공 순서는 승계되는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조동항제3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시하여 공동으로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동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1. 공동 감면신청인들에게는 동일 순위를 부여하되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잠재적 순위를 표시할 수 있다.
2. 공동 감면신청인들 이후에 감면신청한 자의 접수순위는 선순위 공동감면신청이 인정될 경우의 순위와 인정되지 않을 경우의 순위를 병기한다.

제10조(감면신청의 접수 등) ①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즉시 신청서 부본에 접수 일시와 접수 순위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2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별도의 서면(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하나, 공동행위 개요 등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에 접수된 공동행위의 개요와 접수일시, 순위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접수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접수시점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빠른 접수시점을 기재한다.

1. 위원회 카르텔총괄과 방문을 통한 신청의 경우 조사공무원에게 신청서가 도달한 일시분
2. 전자우편(leniency@korea.kr)에 의한 신청의 경우 해당 전자우편 주소로 신청서가 도달한 일시분
3. 팩스(044-200-4444)에 의한 신청의 경우 해당 팩스로 신청서가 도달한 일시분
4. 제8조의2에 의한 구두 감면신청의 경우 구두 감면신청을 위한 구술을 시작한 일시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감면신청을 접수한 경우 카르텔조사국장은 카르텔조사국 이외의 부서에서 처리할 사건은 즉시 해당 부서로 이관해야 한다.

제4장 감면 여부의 결정

제11조(감면 심사보고서 작성 등) 심사관 등은 감면신청 및 자진신고자 등 지위결정을 위한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감면신청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자진신고자 지위 결정) ① 위원회는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신고자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감면신청 후 즉시 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 종료 후 즉시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거나, 공동행위 중단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5. 제출된 증거자료가 공동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③ 위원회가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접수된 증거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자진신고자 등 지위 결정을 의결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의결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2. 공동행위 사건 명칭
3. 신청인이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자진신고자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 및 자진신고 감면 인정 순위(감면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감면신청이 시행령 제35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 및 그 이유)

제5장 조사과정에서의 추가적 자진신고 등

제13조(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 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공동행위(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행위를 모두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감경 또는 면제할 과징금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당해 공동행위의 규모(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20% 범위 내 감경
2.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크고 2배 미만인 경우 : 30% 감경
3.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의 2배 이상 4배 미만인 경우 : 50% 감경
4.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4배 이상인 경우 : 면제

③ 전항의 공동행위의 규모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 의해 판단한다.

④ 제2항에 의한 감경 이전에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감경비율에 제2항 각호의 감경 비율을 합산하여 일괄 감경한다.

제14조(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실효) 제12조에 의해 위원회가 다른 공동행위에 대해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해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5조(비밀 엄수의 의무 등) ① 조사공무원 등은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 증거자료 등을 당해 사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을 위원회의 당해 사건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등을 심사보고서에 가명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보고서에 첨부되는 관련 증거자료에도 그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부분을 삭제, 음영처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결과정에서도 피심인 별로 심사보고서와 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분리심리 등의 방법을 통해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면책 수혜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고발여부) 위원회는 이 고시에 의해 지위를 부여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71조(고발) 제2항에 해당하거나 동 제3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① 법 제22조의2, 시행령 제35조 및 본 고시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Ⅳ.3.다.(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행령 제35조 및 본 고시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경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과징금은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에 의한 부과과징금을 말한다.

신청서 서식(제7조 관련)

[별지 서식]

<table>
<tr><th colspan="6">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신청서</th></tr>
<tr><td rowspan="6">신청인
(공동감면
신청시
별지
기재)</td><td>사 업 자 명</td><td colspan="2"></td><td>사 업 자
등록번호</td><td></td></tr>
<tr><td>대표자 성명</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연 락 처</td><td>전 화 번 호</td><td></td><td>휴 대 폰</td><td></td></tr>
<tr><td>팩 스 번 호</td><td></td><td>이 메 일</td><td></td></tr>
<tr><td rowspan="2">실제 신고하는
자에 관한 사항</td><td>성명</td><td></td><td>근무부서</td><td></td></tr>
<tr><td>전화번호</td><td></td><td>이메일</td><td></td></tr>
<tr><td rowspan="10">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요</td><td colspan="5">※ 다음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고, 상세 내용은 별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합의대상 품목</td><td colspan="4">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 또는 서비스 등 품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td></tr>
<tr><td>합의의 내용</td><td colspan="4">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부터 ○○까지 가격을 ○% 인상하기로 합의</td></tr>
<tr><td>공동행위
참여사업자</td><td colspan="4">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명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td></tr>
<tr><td>실제 회합에
참석한 사람</td><td colspan="4">공동행위와 관련된 회합에 실제로 참석한 사람의 성명, 소속회사, 직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td></tr>
<tr><td>공동행위 기간</td><td colspan="4">공동행위를 시작한 시기, 공동행위가 지속된 기간,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종료된 시점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1999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td></tr>
<tr><td>회합 일시 및
장소</td><td colspan="4">공동행위 가담자들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만난 일시와 장소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2006년 10월 1일 서울시내 ○○○ 음식점</td></tr>
<tr><td>의사연락 및
회합의 방법</td><td colspan="4">공동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들과 취한 의사연락의 방법(예: 이메일, 전화, 팩스 등), 회합의 방법(예: ○○○회의체 구성, 정기적 모임 등)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td></tr>
<tr><td>회합 횟수</td><td colspan="4">공동행위 가담자들이 만난 횟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년부터 ○○년까지 총 10회, 또는 매월 1회</td></tr>
<tr><td>합의 실행
여부 및 방법</td><td colspan="4">합의한 내용을 실행하였는지 여부와 어떻게 실행하였는지에 대해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기준 가격표를 작성하여 그대로 이행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기준가격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벌과금을 부과하고 추후 재조정</td></tr>
<tr><td>증거자료
목록</td><td colspan="5">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증거자료의 예>
・ 합의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회합의 회의록, 합의결과를 기재한 내부문서 등 합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진술서, 확인서, 그밖에 공동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한 자료
・ 사업자들간 의사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 전화통화 기록, 팩스 수・발신 기록, 업무수첩 기재내용 등
・ 회합을 입증할 수 있는 회의장소 사용기록, 신용카드 전표,
・ 기타 공동행위 전후의 경영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내부문서, 보고서 등

목록에 기재된 증거자료는 이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별지 기재 가능).</td></tr>
<tr><td>공동행위
중단여부
및
관련증거
목록</td><td colspan="5">가격환원, 합의파기, 거래재개 등 공동행위로부터 벗어난 사정과 그 시점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목록에 기재된 증거자료는 이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별지 기재 가능).</td></tr>
</table>

<table>
<tr><td>보정기간</td><td colspan="2">위 사항 중 일부사항이 누락된 경우 그 보정에 필요한 기한을 기재합니다. 이 기간은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사관과 협의 하에 60일 범위 내에서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td></tr>
<tr><td rowspan="2">공동
감면신청시
기재사항</td><td>공동 감면신청 사유</td><td>□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 분할 또는 영업양수도의 당사회사
※ 해당 란에 √ 표시하고, 당해 사유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신 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td></tr>
<tr><td>공동 감면신청 요건 미충족시 감면신청인들간 순위</td><td>공동 감면신청인들이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조동항제3호가목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동 순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순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경우 공동 감면신청인들간 순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td></tr>
<tr><td>외국정부에의
감면신청 여부</td><td colspan="2">위원회에 감면신청하기 이전에 외국정부에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만일 신청을 한 경우 감면신청한 외국의 관련당국 명칭과 신청한 일시를 적시하여 주십시오.</td></tr>
<tr><td>신청 이후
주의사항</td><td colspan="2">1. 당해 공동행위 관련 사실을 완전히 진술하고 자신이 보유한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할 것
가. 자진신고자 등이 알고 있는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지체 없이 진술할 것
나.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것
다. 사실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할 것
라. 임직원(가능하다면 전직 임직원 포함)이 위원회의 조사, 심의(심판정 출석 포함) 등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마. 공동행위와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고의로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지 아니할 것
바. 위원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행위사실 및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거나 외국정부에 알리는 경우는 예외)
2. 제출된 자료가 허위가 아닐 것
3. 감면신청 후 즉시 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 종료 후 즉시 공동행위를 중단하고 중단된 상태를 유지할 것
※ 만일 위 주의사항을 어길 경우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td></tr>
<tr><td colspan="3">상기 본인은 위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귀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서약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7조에 의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td></tr>
</table>

접수일시

접수순위

위와 같이 접수함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서명 또는 날인)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시행 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35호, 2015. 10. 23., 일부개정.]

Ⅰ. 목적 및 기본원칙

1.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위반행위(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에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법 집행의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기본원칙

1) 행정지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2) 다만 그 부당한 공동행위가 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적용이 제외된다.

Ⅱ.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에 적용한다. 여기에서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스스로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실제상 지시, 권고, 요망, 주의, 경고 등의 다양한 용어로 시행되고 있다)를 말한다.
2. 따라서 이 지침은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행정기관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개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령에서 행정기관에게 사업자들로 하여금 가격 등 경쟁요소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러한 처분에 따라 사업자들이 가격 등을 합의한 때에는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의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관련 판례〉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을 말함

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임** (대법원1997.5.19. 선고 96누150 판결)

Ⅲ. 행정기관이 사업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 대한 법 집행원칙

<행정기관이 사업자간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

▶ 업계의 합의를 거쳐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도록 행정 지도한 경우
▶ 정부의 공무원과 사업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가격 인상폭 등을 합의한 경우

1. 행정기관이 법령상 구체적 근거 없이 사업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결과 부당한 공동행위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관련 판례〉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에 따름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체로서는 독자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행동하였어야 할 것이고, 공정거래법의 운영은 행정부 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가사 원고와 소외회사 간의 위 합의가 **상공부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또는 그 시정을 명함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수 없음**(서울고법 1992. 1. 29. 91구2030판결)

농수산물공사가 도매사업자들에게 위탁수수료 내지 장려금에 대한 조건을 직접 결정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취지** 및 **관련규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도매시장관리자인 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법인의 권한인 위탁수수료 내지 장려금의 요율을 직접 결정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음(서울고법 2004. 5. 12. 선고 2003누5817 판결, 원고상고 포기로 확정됨)

2. 다만, 다음 각 경우에는 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행정기관이 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행정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1) 그 행정지도의 목적, 수단, 내용, 방법 등이 근거법령에 부합하고 2) 사업자들이 그 행정지도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경우

3. 그 외에의 경우에는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동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3.다.(4)).

Ⅳ. 기타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에 관한 법집행 원칙

1. 행정기관이 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경우, 사업자들이 이를 기화로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한 때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예 1) 행정기관이 가격 인상률을 5% 이하로 하도록 행정지도한데 대해 사업자들이 별도의 합의를 통해 가격 인상률을 5%로 통일한 경우

예 2) 행정지도 전에 사업자들이 가격인상 정도 등을 합의한 후 행정지도에 공동으로 대응한 경우

예 3)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후, 별도로 모임을 가지고 행정지도의 수용여부, 시행절차나 방법 등을 합의한 경우(이 경우에는 합의의 내용 및 성격, 중대성의 정도 등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관련 판례〉

원고들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중략>.. **행정지도를 받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인 자동차업무부장들 사이에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사실을 뒷받침할 뿐 위 행정지도에 앞서 원고들 사이에 위 인상율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또는 위 행정지도를 기화로 위 인상율을 동일하게 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052 판결)

2. 행정지도에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따른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행정기관이 각 사업자의 요금수준을 사실상 인가한 결과 사업자들 간에 가격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하게 형성된 경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시행 2020. 1. 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30호, 2019. 11. 22., 일부개정.]

1. 목 적

- 입찰담합의 유형 및 내용과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입찰에 관련된 활동과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알려주고 이해시킴으로써 관련업계에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입찰과 관련한 법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함.

- 나아가 입찰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경쟁풍토 조성과 건전한 경영활동 보장

2. 이 지침의 성격 및 적용범위

1) 이 지침의 성격

- 이 지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또는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의한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포함한다)로서 입찰행위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으로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형과 처리지침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임.

- 입찰담합으로 추정되는 사항으로 본 지침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어질 것임.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공공적·사적 입찰과 관련된 활동에 포괄적으로 적용됨.

3. 입찰담합의 제유형과 법위반행위

1) 입찰가격담합

사업자가 공동(이하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으로 최저입찰가격(계약목적에 따라서는 최고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

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여기서는 결정이란 계약.협정.결의 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한 최저입찰가격 등을 결정하거나 관련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행위
- 사업자간에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의 교환.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와 사업자단체가 입찰가격결정에 관여하고 그 사실을 관련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 또는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입찰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처의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예정금액보다 높은 수주금액 또는 수준을 정한 후 고의적으로 유찰시키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입찰대상공사에 관한 관련업계의 정보를 수집하는 영업활동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단순히 발주처가 공표한 설계공사금액의 계산에 대해 조사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안전시공과 건설원가인하를 위해 신공법 또는 신기술에 관한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사례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행위
- 중소기업단체가 관련사업자의 공사금액 계산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공통적인 항목에 대해 표준적인 계산방법이나 작업량 등을 알려주는 지도 행위

2)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여기에서 결정이란 계약.협정.결의 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
  ○ 수주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보다 입찰가격을 높게하여 응찰하는 행위
  ○ 개별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을 정리하여 낙찰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들이 이에 협조토록 강요하는 행위

○ 수주희망업체가 협조업체에게 낙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차기 공사발주시 낙찰의 협조, 금품지급 등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이익공여를 약정하는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사전 결정하는 행위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주예정자 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협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는 행위

- 특정입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통하여 특정업체에 낙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
- 특정업체들간에 일정한 범위내의 공사를 교대로 수주하거나 특정업체가 다른 입찰참가업체들의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면서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입찰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입찰에 참가하여 특정업체의 낙찰을 밀어주는 행위
- 특정업체가 산출내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용역업체에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참여사업자에게 배분하는 행위
- 수주예정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후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행위
- 낙찰에서 배제된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자선정에 협조한 대가로 낙찰사업자에게 사례금 또는 특별회비, 부과금 등을 징수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지명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협의없이 경쟁력이 우위인 사업자가 있어 자주적으로 입찰을 사퇴하는 행위
- 발주처가 제시하는 설계단가가 낮아 수익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적 판단에 의해 입찰참가를 하지 않는 행위
- 관련사업 수행능력이 부족 또는 기술경쟁력저위 등의 요인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행위 등

3)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유도하는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배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여기에서 결정이란 계약·협정·의결 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참가자 모두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찰시키거나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 특정사업자의 수주를 목적으로 몇몇 사업자가 공모하여 들러리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하여 특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봉쇄하여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객관적 기준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당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거나 대외공표함으로써 입찰참여를 방해한 후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급격한 가격상승등으로 입찰공고당시 설계금액으로는 입찰참가가 불가능하여 자주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 1차 입찰에만 참여하고 같은 입찰조건이하에서는 수주할 여건이 안되어 재입찰에는 참가하지 않는 경우

4) 수주물량 등의 결정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과 이러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여기서 결정이란 계약.협정.결의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회합 등을 통해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가자간 수주물량배분을 결정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물량 배분등의 결정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기타 불이익 제공 등의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
-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량에 대하여만 응찰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수주를 유도하는 행위

〈허용 되는 행위〉
- 사업자단체 등이 발주에 관한 전반적인 동향(실적 및 전망 등)을 파악하여 개괄적으로 정리·공표하는 행위
- 관련 법령 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경우나 또는 기술적 필요 등에 의해 공동 수주하는 경우

5) 경영간섭 등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 활동에 대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단체가 원재료를 공동구매하여 판매함에 있어 입찰금액이 낮거나 임의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에게는 판매물량의 제한이나 기타 불리한 조건에 의해 판매하는 등을 정하는 행위
- 사업자단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해 입찰가격에 관한 목표를 부여하거나 수주예정자 결정을 위하여 입찰참여 여부를 사전에 통지토록 요청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전에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수주물량의 일부를 특정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분할하는 조건이나 특정사업자로부터의 자재구입 사용조건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케 하는 행위
-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율을 기부금 형태로 납부토록 하거나 특별회비로 납부토록 하여 이익의 일부를 공동사용 또는 배분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사업자단체 등이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사업자(주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제도의 운용에 관해 단순한 요망 또는 의견표명을 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품질보증 및 안전시공을 위해 회합 또는 기타의 의견.자료교환 방식으로 기술분야의 경쟁을 촉진·확산시키려는 행위
- 특정사업자(또는 단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발주자에 대한 기술관계 등 입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행위

4.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21조(시정조치) 및 제27조(시정조치)〉
- 필요한 조치로는 입찰담합과 관련한 협정의 파기, 협정을 파기한 사실의 주지철저, 금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임.

- 위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입찰담합을 주도한 사업자와 입찰과정에서 최종 낙찰자에 협력한 사업자는 모두 담합참가자로 간주되며 위원회의 조치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없음.

2)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행위를 한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치 외에 필요한 경우 법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다만,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함.

* 과거 5년간의 기간 산정: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위원회 시정조치일로부터 과거 5년으로 역산하되 초일을 산입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 1개의 사건에 대하여 서로다른 유형의 시정조치가 병과된 경우에는 최상위 조치유형의 점수만 반영함.

3)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과징금 부과한도, 과징금 산정방법, 과징금 부과기준 등은 법 제22조(과징금), 법 제28조(과징금), 시행령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 시행령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관련 별표2,「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4)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사안에 따라 관련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와 관련한 직원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며〈법 71조(고발)〉, 고발할 경우 고발기준 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름.

5) 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등

-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후에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등)〉, 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 제35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및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에 따름.

5. 입찰담합 방지 위한 유의사항

-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는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을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경쟁사업자간에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거나 사업자단체 또는 제3의 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 행위가 법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법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경쟁사업자와의 회합에서 입찰담합의 내용이 결정되었을 경우 당해사업자의 반대 또는 불참여의 의사가 의사록에 기재되는 등의 명확한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될 우려가 큼. 따라서 내용을 공표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경쟁사업자간의 회합에는 가급적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회합에서 가격 등에 관한 협의 등이 이루어져 위법행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는 퇴석하고 그 사실을 기록에 남겨두거나 위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사업자단체활동지침

[시행 2020. 5.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2호, 2020. 5. 20., 일부개정.]

1.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는 법위반 유형과 위반되지 않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사업자단체가 법위반 여부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법제2조제4호)

가. 사업자단체는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 규정의 "사업자"들이 조직한 모든 단체를 포함한다. 단체를 조직한 자들이 사업자이기만 하면 그 조직 구성원은 법인이든 조합이든 회사이든 법적 형태를 상관하지 않는다.

나.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보고 이들이 조직한 단체도 포함한다.

다. 2이상의 사업자가 조직한 결합체(00조합, 00협회, 00협의회, 00회의소, 00지부, 00지회 등)들의 연합체(00연합회, 00중앙회 등)도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3. 사업자단체활동에 관한 일반지침

아래에 열거된 사항은 사업자단체의 활동 중에서 흔히 나타나는 법위반 유형을 제시한 것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도 공정거래법상 위반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과 허용되는 사항"은 사안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위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가격, 수량, 거래조건, 거래상대방의 결정 등 모든 사업활동은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할 때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단체가 문서·구두 등의 수단과 강요·요청·권고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구속하거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가 타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와 계약체결 등을 통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경우도 포함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인하율(폭)을 결정하는 행위

②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③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계산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유지·변경하게 하는 행위

④ 과당경쟁방지,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가격 이하로 응찰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⑤ 다른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사업자이외의 사업자와 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 구성사업자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게 하는 행위

⑥ 국·내외 자료를 통하여 원가분석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제시하여 구성사업자가 이에 따라 가격결정을 하거나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⑦ 구성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의 구입가격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① 대금지급방법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결정 하게 하는 행위

② 상품인도일로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을 정하거나 어음의 만기일등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금지급기간을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③ 수요자의 편익이 증대되지 않는데도 상품 등의 인도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④ 수요자의 편익이 증대되지 않는데도 상품 등에 대한 아프터서비스의 기간, 내용,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별로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을 할당하거나, 그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

② 최고·최저생산량, 필요재고량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의 생산량 등 수량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의 상품 생산을 위한 가동율, 가동시간, 원료구입, 시설의 신·증설 및 개체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판매수량을 제한하는 행위

④ 구성사업자의 수·출입 추천 또는 원재료 구입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⑤ 생산, 출고, 판매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가 생산·출고·판매량을 결정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에게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할당하거나, 이를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게 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 자격 등을 제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수주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④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특정의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별로 생산·판매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에게 설비의 신·증설 또는 개체를 제한하게 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는 행위

③ 시설이나 장비의 도입처, 도입자금, 도입경로 등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시설의 신·증설 또는 장비의 도입을 제한하는 행위

6)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별로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별로 생산품목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② 새로운 상품의 개발·생산·판매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① 상품의 생산·구매·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회사를 설립하여 모든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이 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의 제품판매수익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제반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이익을 판매수익에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8)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①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거나 거부함으로써 비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제약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비구성사업자에게 회원가입을 강제하거나 구성사업자와 가격을 동일하게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을 하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④ 비구성사업자라는 이유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관련 정보망 등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비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⑤ 비구성사업자의 저가 판매행위를 저지할 목적으로 비구성사업자를 비방하는 전단을 작성하여 배포하거나 집단적인 시위를 통해 영업을 방해 하는 행위

⑥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을 일정한 용도이외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9)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①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일정한 영업기간 등 가입조건을 어렵게 하거나, 신규가입자에 대해 기존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

② 신규 창업을 저지하거나 기존 사업자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사업분야에 있어서 사업자 수의 증가를 제한하는 행위

③ 신규가입시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거나 특정한 장소 내에 또는 매매후 일정한 기간 내에 신규 개설·이전·승계 등을 금지하는 행위

④ 신규가입 또는 탈퇴를 제한할 목적으로 또는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정도로 높은 수준의 가입비를 징수하는 행위

10)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① 각종 증명서의 교부나 추천을 거부하거나 지연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②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조업을 단축하도록 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에게 공동사업의 이용을 강제하거나 부당하게 구성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④ 구성사업자에게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여 강제하거나 직원의 채용 또는 자유로운 기술 개발·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구성사업자의 광고내용, 광고회수, 광고매체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⑥ 단체로부터의 탈퇴를 강요하거나 거부함으로써 구성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1)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① 사업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이하 "경쟁사업자"라고 함)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게 하거나 거래에 관계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제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②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가격,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차별하여 취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게 하거나, 또는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④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위계에 의하여 고객을 유인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⑤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하여 끼워팔기, 거래강제 등을 강요하는 행위

⑥ 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구입강제, 이익제공, 불이익제공 등을 강요하도록 하는 행위

⑦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게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⑧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2)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주거나 일정율 이하 또는 그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13) 기타 행정지도 등에 관한 행위
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정지도(지도, 지시, 권고, 요망, 주의, 경고 등 용어 불문)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② 사업자단체가 회칙 등을 제정하여 주무부처의 승인·인가 등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회칙 등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인가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 행위

사업자단체는 업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정부시책에 반영시키고,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롭고 유익한 정보가 관련업계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하는 등 전문화·고도화되어 가는 산업사회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사업자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행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기관, 민간의 조사기관 등이 제공하는 당해 산업에 관련한 국내 및 해외시장, 경제동향, 경영지식, 시장환경, 입법·행정의 동향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행위
2) 경영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정부에의 시책건의 및 평가
3) 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의 보급 및 기능의 훈련을 하는 행위
4) 당해 산업의 활동실적을 전반적으로 알리기 위해 단순히 과거의 생산, 판매, 설비투자 등에 관한 수량과 금액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과거의 사실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를 통계처리하고 공표하는 행위(단, 각 구성사업자의 수량과 금액 등을 명시하는 행위는 제외)
5)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구속하지 않으면서 공동서비스 센터의 설치 등 수요자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6) 공해 또는 위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구성사업자를 구속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거래방법, 운송수단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
7) 고객의 편리를 위한 공동 주차장과 산업전체의 판매증진을 위한 공동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8) 당해 사업 전체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선전활동, 복리후생활동, 사회문화활동 등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동사업을 하는 행위
9) 과다한 경품류제공 등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하는 행위(단,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안되며, 공정거래법상 심사 요청 가능)
10)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표시·광고에 관한 규약을 정하는 행위(단,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안되며,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 심사요청 가능)
11) 소비자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12) 산업능률향상 등을 위한 규격·품질에 대한 자율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단,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안되며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사전인가 필요)
13) 사업자단체가 그 설립의 목적과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내용의 가입자격요건과 제명사유 등을 설정하는 행위
14) 사업자단체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금액의 가입비와 합리적인 계산근거에 기초를 둔 회비(분담금, 출자금 등)를 징수하는 행위
15) 가입조건과 관계되는 행위로서 가입비와 회비(분담금, 출자금 등)에 관하여 구성사업자간 기업규모 등에 따라 합리적인 격차를 마련하는 행위
16) 총회의 의결사항, 의결방법,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 의결정족수 등 총회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정관 및 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 운영하는 행위
17) 소비자보호 및 업계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실 등을 설치하고 분쟁사항에 대하여 조정이나 중재업무를 하는 행위
18) 구성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서류의 대행접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4. 사업자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특례제도

가.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행위

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된다.〈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그러나 다른 법령에 근거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일탈하여 구성사업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다.

2) 일정한 조합의 행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조합 고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라 하더라도 조합에 대규모사업자가 하나라도 포함되거나 조합원의 가입·탈퇴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합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공정거래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경쟁제한행위가 ① 산업합리화, ② 연구·기술개발, ③ 불황의 극복, ④ 산업구조의 조정, ⑤ 거래조건의 합리화, ⑥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4조의2 내지 제28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 2017. 11. 30., 일부개정.]

Ⅰ.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61조 제1항·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의

1.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서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각 참작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관련매출액 및 동 단서에 의한 관련 상품(상품에는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상품의 범위

1)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2) 위 (1)에 의하여 관련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상품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상품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 또는 「당해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다.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 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영 제9조의2(영업수익 사용 사업자의 범위)의 규정은 이 고시를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평균매출액(영 제9조 관련)

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의 기준

영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나. 매출액 산정자료

위반사업자가 회계실무관행상 위반행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기초로 영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하여 평균매출액을 산정한다.

8. 위반액

가. "위반액"은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17조(과징금)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채무보증액, 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7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 및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을 각각 말한다.

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7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은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한 금액을 말한다. 이 때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액을,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다.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에 제공한 금액(정상적인 거래에서 기대되는 급부와의 차액)을 말한다. 이 때 위반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을,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의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9.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말한다. 이 때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예산액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매 사업연도의 예산액 중 최근의 것을 말한다.

10.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1.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유형은 ①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법 제3조의2제1항) ②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법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항) ③부당한 공동행위(법 제19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법 제26조 제1항)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법 제28조 제2항) ④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법 제29조) ⑤부당한 지원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제2항) ⑥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법 제23조의2 제1항·제3항), ⑦보복조치(법 제23조의3) 등 7종으로 나눈다.

12.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13.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이하 "위반횟수 가중치"라 한다)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위반횟수 가중치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가중치 산정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가중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일반원칙

가.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그 밖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유지·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가격 또는 물량의 결정·유지·변경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2) 가격·물량 외의 거래조건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크거나 다수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에 의하여 위반사업자가 현저한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얻게 한 경우

다. 아래 2.에서 정한 행위유형별 기준은 위 가. 및 나.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아래 2.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로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일반원칙상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위 1. 가. 내지 다. 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사업자가 과거 5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는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할 때에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와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행위유형별 기준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법 제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효과,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1)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위반의 정도나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효과,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참가사업자들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그 참가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원칙 및 위반한 각 금지행위의 행위유형별 기준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3) 사건절차규칙 제50조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중 1. 부당한 공동행위 및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부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1)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 외의 유형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시행령 별표 1의2에 규정된 세부행위유형을 말한다)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하여는 ①다수의 경쟁사업자,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②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또는 ③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사건절차규칙 제50조 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 중 2.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부당한 지원행위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업계의 특수성이나 거래관행 등을 참작할 때 위반의 정도나 지원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지원객체가 참여하는 관련 시장에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위반의 정도나 위반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보복조치

법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위반의 정도나 위반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Ⅳ.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마련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관련시장 현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기타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2.3% 이상 3.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5% 이상 2.3%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3% 이상 1.5% 미만

2)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6조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8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억원 이상 8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천만원 이상 4억원 미만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0%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8%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

다.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6 이상	8.5% 이상 10.0% 이하
	2.2 이상 2.6 미만	7.0% 이상 8.5%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8 이상 2.2 미만	5.0% 이상 7.0% 미만
	1.4 이상 1.8 미만	3.0% 이상 5.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5% 이상 3.0% 미만

나) 관련상품의 범위는 참가사업자들이 맺은 합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II.5.나.의 원칙에 따른다. 다만, 합의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질적 거래관계와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미친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다음과 같이 본다.

(1)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참가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2) 법 제19조제5항에 의한 합의추정 등의 경우와 같이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다만, 실행을 개시한 후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 발생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에 관하여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종료일로 본다. 참가사업자들이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과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의 수와 그에 상응하는 종료일을 판단한다.

마) 입찰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낙찰(경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이하 같다)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2분의 1 범위 내(지분율 7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1 이내, 지분율 30% 이상 7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3 이내, 지분율 3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

(2)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자(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4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하며,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수를 말한다)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

바)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22조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6 이상	17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2.2 이상 2.6 미만	15억원 이상 17억원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8 이상 2.2 미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4 이상 1.8 미만	8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1천만원 이상 8억원 미만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가)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70%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10%

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억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28조 제2항)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6 이상	8.5% 이상 10.0% 이하
	2.2 이상 2.6 미만	7.0% 이상 8.5%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8 이상 2.2 미만	5.0% 이상 7.0% 미만
	1.4 이상 1.8 미만	3.0% 이상 5.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 이상 3.0% 미만

(법 제28조 제3항)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0% 이상 5.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5% 이상 3.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 이상 1.5% 미만

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28조 제2항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6 이상	17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2.2 이상 2.6 미만	15억원 이상 17억원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8 이상 2.2 미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4 이상 1.8 미만	8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1천만원 이상 8억원 미만

(법 제28조 제3항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8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억원 이상 8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4억원 미만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6% 이상 2.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0.8% 이상 1.6%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 이상 0.8% 미만

2)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24조의2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마. 부당한 지원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80%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5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80%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5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사. 보복조치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24조의2 제1항)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6% 이상 2.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0.8% 이상 1.6%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 이상 0.8% 미만

2)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아. 위 가. 다. 라. 또는 사.에서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및 관련시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2. 1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에는 2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가)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
   나) 과거 5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미만
   다) 과거 5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미만
   라) 과거 5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위 Ⅲ. 1. 라. 및 Ⅳ. 2. 나.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또는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 포함)을 제외한다.

3. 2차 조정

가. 일반원칙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1) 〈삭제〉
2) 〈삭제〉
3)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에 응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내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사업자들간에 공동행위의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사업자단체가 제26조제1항제1호에 위반하는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50 이내
2) 〈삭제〉
3) 조사협력 등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다만, 법 제19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 받는 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삭제〉

5)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이 때 자진 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 경쟁질서의 회복 또는 피해의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의 개선, 기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법 제19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받는 자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가)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만큼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내

나)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의 50% 이상 인하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라) 위 (가) 내지 (다)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법 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감액하되, 이하 (가) ~ (나)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다만,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라도, 이하의 100분의 30 이내 감액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으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 ~ 2)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조정은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 요인 및 인상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하 (가) ~ (나)의 사항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거나, (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고 (ii)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이익이 적자, (ii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50% 초과 감경 없이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 ~ 2)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비율 등 다른 위반사업자와의 비교형량 결과 동 사유에 따른 감경 없이는 비례·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및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하여,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삭제〉

다.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라.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임의적 조정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마.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사.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KEB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KEB하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적용

법 제19조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 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위 4.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부과과징금(부과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